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746호 2023. 5. 9.(화)**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72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1
남해군 조례 제2673호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 6
남해군 조례 제2674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남해군 조례 제2675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남해군 조례 제2676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남해군 조례 제2677호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남해군 조례 제2678호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0
남해군 조례 제2679호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	· 25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54호	2023년도 남해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 26
남해군 고시 제2023-55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8
남해군 고시 제2023-56호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9
남해군 고시 제2023-57호	남해군관리계획(아난티남해리조트: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48
남해군 고시 제2023-58호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고시	· 63
남해군 고시 제2023-59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 65
남해군 고시 제2023-60호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	· 67
남해군 고시 제2023-6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 69
남해군 고시 제2023-6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71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597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 73
남해군 공고 제2023-60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6
남해군 공고 제2023-606호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81
남해군 공고 제2023-621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86
남해군 공고 제2023-626호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1
남해군 공고 제2023-642호	군도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96
남해군 공고 제2023-654호	2023-2024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문	· 98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72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부군수,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 을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 회계업무 부서장” 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로 한다.

**제3조(「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협의회의 비상설화)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을 “위원을”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임기 중”을 “스스로”로 한다.

**제5조(「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로”를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을 “위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중 “위원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 를 “둘 수 있다” 로 한다.

**제7조(「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의 개정)**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를 “위원장과” 로 한다.

**제8조(「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위원의 임기 등)” 을“(위원회의 비상설화)”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중이라도 위원” 을 “위원” 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를 “군수가” 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이” 를 “군수가” 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를 “개최한다” 로 한다.

**제10조(「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3항 중 “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를 “회의는 군수가” 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를 “개최한다” 로 한다.

**제11조(「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 위원” 을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장이” 를 “군수가” 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남해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15조(「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73호

##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74호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국내 여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를 “여비는 영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75호

##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민” 을 각각 “남해군민” 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양성평등정책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 3.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4.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 지원
- 5. 제15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76호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2년 1월부터 12월” 을 “2023년 1월부터 12월” 로, “2022년 7월” 을 “2023년 7월” 로 한다.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7월 1일” 을 “2023년 7월 1일” 로 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677호

##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제2조 중 “군수는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각각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편성” 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를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단,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으며” 를 “다만”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분하여” 를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실비 지급 등 지원” 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실비 지급 등)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

제19조 앞에 “제5장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를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 를 “여성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 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주부민방위기동대” 를 “여성민방위기동대” 로 한다.

별표 3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부민방위기동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편성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본다.

[별표 1]

여성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li> <li>2. 민방위창고 점검</li> <li>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li> <li>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li> <li>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li> <li>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li> <li>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li> <li>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li> <li>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li> <li>10. 그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li> </ol>
민방위사태·재난발생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li> <li>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li> <li>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li> <li>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li> <li>5. 비상급수·관리 지원</li> <li>6. 사후관리 복구 지원</li> <li>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li> <li>8. 그 밖에 도지사,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li> </ol>

[별표 2]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제3호 관련)

반 명	분 장 업 무
지휘반	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사항 4. 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	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	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법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의
보유기술 및 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 필증

지원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

###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성명	직위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OO	OOO	주무관	ooooo@korea.kr	055-XXX-XXXX	OOO



남해군 조례 제2678호

##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군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 내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군 내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해촉)**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6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편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남해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Tel : 055-860-32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남해군 조례 제2679호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3년 5월 9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54호

2023년도 남해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우리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남 해 군 수

- 1.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2.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 3. 대 상 :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 가. 건물의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판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
  - 나. 건물번호판이 분실·훼손된 경우 등
- 4. 적용기간 : 2023. 4. 24.~2023. 12. 31.

## 5.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비용

도로구분	건물용도	모 양	규격(mm)	금액(원)	비고
길급	일반용	오각형	260×215×1	6,000	
	관공서용	원형	∅400×1	18,000	
	문화재·관광용	사각형	400×400×1	18,000	

6. 납부방법 : 남해군 수입증지

7. 업무담당 : 남해군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전화 055-860-3024)

남해군 고시 제2023-55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 1.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1>참조
-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1]

## 군관리계획(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관리지역	소계	92,359	100.0	
	계획관리지역	59,870	64.8	
	보전관리지역	32,489	35.2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이동면 신전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735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92,35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1.16)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신전숲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일원	92,359	-	92,35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1.16)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4.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2,359		92,359	100.0	
관광휴양시설 용지	51,020		51,020	55.2	
숙박단지	10,680		10,680	11.6	
펜션	1,595		1,595	1.7	
수영장	923		923	1.0	
병영막사 체험장	1,860	감)1,860	-	-	
연꽃 테마원	7,218		7,218	7.8	
만남의 광장	300		300	0.3	
휴게쉼터 및 산책로	825		825	0.9	
분수광장	500		500	0.5	
판매장 및 홍보체험관	1,300		1,300	1.4	
어린이놀이터	705	감)705	-	-	
어울림광장	2,099	감)691	1,408	1.5	
오토캠핑장	2,731		2,731	3.0	
청소년야영장	20,284		20,284	22.0	
IT 코워킹 플랫폼	-	증)3,256	3,256	3.5	
공공시설용지	12,977		12,977	14.1	
주민활성화센터	1,100		1,100	1.2	
오수처리장	240		240	0.3	
발전시설	971		971	1.0	
주 차 장	3,769		3,769	4.1	
안 내 소	240		240	0.3	
도 로	6,657		6,657	7.2	
녹지용지	28,362		28,362	30.7	

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4.2.1. 도로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4	812	6,657	-	-	-	-	-	-	4	812	6,657
소로	4	812	6,657	-	-	-	-	-	-	4	812	6,657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7.5	국지 도로	472	신전리 862-4	화계리 77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2	7.5	국지 도로	90	신전리 728	신전리 743-3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3	7.5	국지 도로	103	화계리 82-4	화계리 79-4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보1	5~7	특수 도로	147	소로 3-1호선	신전리 743-6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9-133호 (2019.10.24.)	

4.2.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1	신전리 733	1,029	-	1,02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01.16.)	
기정	2	주차장2	신전리 733	2,740	-	2,74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4.2.3.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태양광 설비	신전리 733-1	971	-	971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4.2.4.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오수 처리장	신전리 733	40	-	4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2	오수 처리장	신전리 798-11	200	-	20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4.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4.3.1. 관광·휴양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I	51,020	-	51,020	I-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500	-	500	분수광장
				I-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2,099	감)691	1,408	어울림광장
				I-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705	감)705	-	어린이놀이터
				I-4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825	-	825	휴게쉼터 및 산책로
				I-5	이동면 화계리 74번지 일원	300	-	300	만남의 광장
				I-6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1,595	-	1,595	펜션
				I-7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860	감)1,860	-	병영막사 체험장
				I-8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923	-	923	수영장
				I-9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300	-	1,300	판매장 및 홍보체험관
				I-10	이동면 신전리 748-1번지 일원	7,218	-	7,218	연꽃테마원
				I-11	이동면 신전리 798-3번지 일원	10,680	-	10,680	숙박단지
				I-12	이동면 화계리 79-5번지 일원	2,731	-	2,731	오토캠핑장
				I-13	이동면 신전리 743-3번지 일원	11,451	-	11,451	청소년야영장
				I-14	이동면 신전리 743-1번지 일원	8,833	-	8,833	청소년야영장
				I-15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	증)3,256	3,256	IT 코워킹 플랫폼

4.3.2. 공공시설용지 (변경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II	12,977	-	12,977	II-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6,657	-	6,657	도로 (보행자전용 도로)
				II-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3,769	-	3,769	주차장
				II-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100	-	1,100	주민활성화 센터
				II-4	이동면 신전리 733-4번지 일원	240	-	240	안내소
				II-5	이동면 신전리 798-11번지 일원	240	-	240	오수처리장
				II-6	이동면 신전리 733-1번지 일원	971	-	971	발전시설

4.3.3. 녹지용지 (변경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III	28,362	-	28,362	III-1	이동면 신전리 752-2번지 일원	28,362	-	28,362	녹지

4.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4.4.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I-2, I-4, I-5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6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8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9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10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11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라 목 그밖에 유사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12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3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에 허용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14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에 허용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15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계획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4.4.2. 공공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2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3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I-4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60%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5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6	용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4.4.3. 녹지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I-1	용도	지정용도	• 녹지
		권장용도	• 녹지
		불허용도	• 건축불허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남해군 고시 제2023-56호

##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1>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1]

## 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1. 용도지구 (변경없음)

#### 1.1.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상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상신매립지)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상신리 1-1번지일원	205,400	-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3.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100.0	
체육시설 용지	체육시설소계	55,743	증)10,797	66,540	32.4	
	체육시설	35,652	증)8,480	44,132	21.5	
	승마장	11,762	감)600	11,162	5.4	
	주차장	3,067	감)287	2,780	1.4	
	조경·완충녹지	5,262	증)3,204	8,466	4.1	
관광휴양 시설용지	관광휴양소계	8,355	-	8,355	4.1	
	간이역	4,210	-	4,210	2.1	
	보물섬레일파크	3,100	-	3,100	1.5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1,045	-	1,045	0.5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소계	14,140	감)5,230	8,910	4.3	
	주차장	7,119	감)5,230	1,889	0.9	
	도로	7,021	-	7,021	3.4	
녹지용지	녹지소계	127,162	감)5,567	121,595	59.2	
	녹지(유수지)	89,679	-	89,679	43.7	
	조경·완충녹지	10,667	감)5,567	5,100	2.5	
	공원	26,816	-	26,816	13.0	

3.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2.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74	상신리 1-3 답	상죽리 10-9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6	중로3-1	상신리 1-7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3	51	6.5	국지 도로	1,897	상신리 353	오용리 1243-4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구역내 L=420

3.2.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창선면 상죽리 10-9답 일원	3,067	감)287	2,78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변경	2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0-27답 일원	5,230	감)5,230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기정	3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7답 일원	1,889	-	1,889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1	○ 면적변경 (A=3,067m <sup>2</sup> →2,780m <sup>2</sup> )	○ 현황여건을 반영한 주차장 면적변경
2	주차장2	○ 폐지(A=5,230m <sup>2</sup> )	○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폐지

3.2.3. 공원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동대만 생태공원	문화 공원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6,816	-	26,816	남해군고시 제2021-9호 (2021.1.12)	

3.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205,400	-	205,400	
-	I	55,743	증)10,797	66,540	I-1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35,652	증)8,480	44,132	체육시설
					I-2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11,762	감)600	11,162	체육시설
					I-3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3,067	감)287	2,780	체육시설
					I-4	창선면 상죽리 10-15번지 일원	5,262	증)3,204	8,466	체육시설
-	II	8,355	-	8,355	II-1	창선면 상신리 2-1번지 일원	4,210	-	4,210	관광 휴양시설
					II-2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3,100	-	3,100	관광 휴양시설
					II-3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1,045	-	1,045	관광 휴양시설
-	III	14,140	감)5,230	8,910	III-1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4,490	-	4,490	공공시설
					III-2	창선면 상신리 10-27번지 일원	5,230	감)5,230	-	공공시설
					III-3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1,889	-	1,889	공공시설
					III-4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297	-	297	공공시설
					III-5	창선면 상죽리 10-1번지 일원	2,234	-	2,234	공공시설
-	IV	127,162	감)5,567	121,595	IV-1	창선면 상죽리 10-2번지 일원	89,679	-	89,679	녹지
					IV-2	창선면 상신리 5-4번지 일원	5,567	감)5,567	-	녹지
					IV-3	창선면 상죽리 10-27번지 일원	5,100	-	5,100	녹지
					IV-4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6,816	-	26,816	녹지

3.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2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승마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3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4	용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	II-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15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2	용도	지정용도	보물섬레일파크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3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III	III-1 III-4 III-5	III-1 III-4 III-5	영 지	지정용도	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I-2 III-3	III-3	영 지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녹지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IV	IV-1 IV-2 IV-3	IV-1 IV-3	영 지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V-4	IV-4	영 지	지정용도	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용 적 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높 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4.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계	26,816	100.0	
도로 및 광장	6,216	23.2	
조경시설	399	1.5	
휴양시설	1,888	7.0	
유희시설	966	3.6	
교양시설	1,011	3.8	
편익시설	943	3.5	
공원관리시설	75	0.3	
녹지 및 기타	15,318	57.1	조경·완충녹지

☑ 시설별 조서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비고
총계			26,816		
시설면적			11,498		
도로/광장	소계		6,216		
	도로		4,160		
	광장	가-1	453		
		가-2	473		
		가-3	426		
		가-4	425		
		가-5	279		
조경시설	소계		399		
	습지탐방로	나-1	216		
		나-2	183		
	꽃잎트렐리스	①		1	
	꽃잎조형물	②		6	
	보행교	③		1	
	데크탐방로	④		1	
휴양시설	소계		1,888		
	잔디광장	다-1	1,260		
	휴게쉼터	다-2	339		
	데크쉼터	다-3	289		
	퍼골라	⑤		7	
	막구조퍼골라	⑥		7	
	휴게트렐리스	⑦		1	
유희시설	소계		966		
	테마놀이터	라	966		
	그물놀이대	⑧		1	
교양시설	소계		1,011		
	테마정원	마-1	563		
		마-2	290		
		마-3	158		
편익시설	소계		943		
	지역특산물장터	바-1	750		
	먹거리쉼터	바-2	193		
공원관리시설	소계		75		
	관리사무소	사-1	60		매표소 포함
		사-2	15		
녹지/기타	소계		15,318		
	녹지		15,318		

남해군 고시 제2023-57호

**남해군관리계획(아난티남해리조트: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아난티남해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 1.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311-1번지 일원
- 2. 면적 : A = 833,946㎡ → 831,930㎡(감 2,016㎡)
- 3.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
- 4.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 남해군관리계획(아난티남해리조트: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5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덕월리 311-1번지 일원	833,946	경상남도고시 제2004-19 (2004.01.15.)	
변경	15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덕월리 311-1번지 일원	831,930	〃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아난티남해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 면적 변경(감: 2,016㎡) A = 833,946㎡ → 831,930㎡	○ 이용객들의 원활한 이용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추가부지 확보 및 개발계획 변경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33,946	감) 2,016	831,930	100.00	-	
체육시설용지	755,946	감) 38,236	717,710	86.27	-	
체육시설	351,201	감) 990	350,211	42.09	-	
골프코스	339,412	감) 2,686	336,726	40.47	I -1	
코스시설	215,996	증) 9,755	225,751	27.13		
그늘집1	830	감) 830	-	-		
그늘집2	720	-	720	0.09		
화장실	-	증) 250	250	0.03		
연습그린	833	-	833	0.10		
저류지	100,979	감) 21,340	79,639	9.57		
관리도로	20,054	증) 9,479	29,533	3.55		
묘포장	480	감) 480	-	-		-
직원 숙소	-	증) 2,945	2,945	0.35		I -2
클럽하우스	1,549	증) 174	1,723	0.21	I -3	
축구장	6,080	감) 147	5,933	0.71	I -4	
코스관리동	3,680	감) 796	2,884	0.35	I -5	
공공시설	33,331	감) 9,380	23,951	2.88	-	
주차장	1,258	감) 1,258	-	-	-	
도로	4,183	증) 40	4,223	0.51	I -6	
오수처리장	-	증) 2,530	2,530	0.30	I -8	
녹지	371,414	감) 27,866	343,548	41.30	-	
원형보전	64,038	증) 18,144	82,182	9.88	I -9	
조성	307,376	감) 46,010	261,366	31.42	I -10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광·휴양시설용지	78,000	증) 36,220	114,220	13.73	-
숙박시설	39,590	증) 32,930	72,520	8.72	-
휴양콘도미니엄	10,145	-	10,145	1.22	Ⅱ-1
	903	-	903	0.11	Ⅱ-2
	2,582	-	2,582	0.31	Ⅱ-3
	7,600	증) 4,797	12,397	1.49	Ⅱ-4
	3,750	-	3,750	0.45	Ⅱ-5
	4,657	-	4,657	0.56	Ⅱ-6
	4,141	-	4,141	0.50	Ⅱ-7
	4,225	-	4,225	0.51	Ⅱ-8
	1,380	증) 1,420	2,800	0.34	Ⅱ-9
	207	-	207	0.02	Ⅱ-10
	-	증) 14,350	14,350	1.72	Ⅱ-11
	-	증) 12,363	12,363	1.49	Ⅱ-12
휴양문화시설	-	증) 1,434	1,434	0.17	-
피크닉장	-	증) 734	734	0.09	Ⅱ-13
관광안내센터	-	증) 700	700	0.08	Ⅱ-14
공공시설	12,506	증) 964	13,470	1.62	-
주차장	2,639	감) 2,639	-	-	-
	78	감) 78	-	-	-
	158	감) 158	-	-	-
	169	감) 169	-	-	-
	200	감) 200	-	-	-
	189	감) 189	-	-	-
	100	감) 100	-	-	-
	-	증) 2,039	2,039	0.25	Ⅱ-15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4,503	증) 51	4,554	0.55	Ⅱ-16
		655	증) 1,535	2,190	0.26	Ⅱ-17
		3,815	증) 184	3,999	0.48	Ⅱ-18
		-	증) 688	688	0.08	Ⅱ-19
녹지		25,904	증) 892	26,796	3.22	-
	원형보전	706	감) 564	142	0.02	Ⅱ-20
		-	증) 26	26	-	Ⅱ-21
		431	증) 375	806	0.10	Ⅱ-22
		718	감) 718	-	-	-
		126	-	126	0.01	Ⅱ-23
		5,193	감) 102	5,091	0.61	Ⅱ-24
		-	증) 568	568	0.07	Ⅱ-25
		8,657	증) 637	9,294	1.12	Ⅱ-26
		5,353	감) 230	5,123	0.62	Ⅱ-27
		734	감) 734	-	-	-
		-	증) 472	472	0.05	Ⅱ-28
		조성	-	증) 529	529	0.06
3,882	감) 2,818		1,064	0.13	Ⅱ-30	
104	-		104	0.01	Ⅱ-31	
-	증) 2,717		2,717	0.33	Ⅱ-32	
-	증) 734		734	0.09	Ⅱ-33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3	1,923	20,727	-	-	-	1	783	7,047	2	1,140	13,680
중 로	2	1,140	13,680	-	-	-	-	-	-	2	1,140	13,680
소 로	1	783	7,047	-	-	-	1	783	7,047	-	-	-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1	9	보조 간선 도로	783	중로3-1	308-4잡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4-284호 ( '04.10.14.)	-
기정	중로	3	1	12	주 간선 도로	770	남측 구역계	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4-19호 ( '04.1.15.)	지구외
기정	중로	3	5	12	주 간선 도로	371	덕월리 244	덕월리 558-3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4-284호 ( '04.10.14)	지구외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m <sup>2</sup>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755,946	717,710	-	-	-	755,946	717,710	
I-1	I	755,946	717,710	I-1	I-1	평산리 482-1잡 일원	339,412	336,726	골프코스
-				I-2	-	덕월리 307-2임 일원	480	-	묘포장 (폐지)
I-2				-	I-2	덕월리 282-3전 일원	-	2,945	직원숙소
I-3				I-3	I-3	덕월리 306-2임 일원	1,549	1,723	클럽 하우스
I-4				I-4	I-4	덕월리 산21-18임 일원	6,080	5,933	축구장
I-5				I-5	I-5	덕월리 산35-5임 일원	3,680	2,884	코스 관리동
-				I-6	-	덕월리 306-9임 일원	1,258	-	주차장 (폐지)
I-6				I-7	I-6	덕월리 282-5도 일원	4,183	4,223	주차장
I-7				I-8	I-7	덕월리 311-3잡 일원	27,890	17,198	도로
I-8				-	I-8	덕월리 312-1전 일원	-	2,530	오수 처리장
I-9	I-9	I-9	덕월리 307-2임 일원	64,038	82,182	원형보전녹 지			
I-10	I-10	I-10	덕월리 311-1잡 일원	307,376	261,366	조성 녹지			

2) 관광·휴양용지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번 호						비고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m <sup>2</sup>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78,000	114,220	-	-	-	78,000	114,220	
II-1	II	78,000	114,220	II-1	II-1	덕월리 320임 일원	10,145	10,145	휴양 콘도 미니엄
II-2				II-2	II-2	덕월리 316임 일원	903	903	
II-3				II-3	II-3	덕월리 307-4임 일원	2,582	2,582	
II-4				II-4	II-4	덕월리 306-11임 일원	7,600	12,397	
II-5				II-5	II-5	덕월리 304-3임 일원	3,750	3,750	
II-6				II-6	II-6	덕월리 303-1임 일원	4,657	4,657	
II-7				II-7	II-7	덕월리 270-1임 일원	4,141	4,141	
II-8				II-8	II-8	덕월리 269임 일원	4,225	4,225	
II-9				II-9	II-9	남면 덕월리 산9-4임 일원	1,380	2,800	
II-10				II-10	II-10	남면 덕월리 산7임 일원	207	207	
II-11				-	II-11	남면 덕월리 산14-3임 일원	-	14,350	
II-12				-	II-12	남면 덕월리 340임 일원	-	12,363	
II-13				-	II-13	덕월리 266-11임	-	734	피크닉장
II-14				-	II-14	덕월리 307-17임 일원	-	700	관광 안내센터
-						II-11	-	덕월리 308-2임 일원	2,639
-			II-12	-	덕월리 산9-5임 일원	78	-		
-			II-13	-	덕월리 산19-5임 일원	158	-		
-			II-14	-	덕월리 269-3임 일원	169	-		
-			II-15	-	덕월리 산9-4임 일원	200	-		
-			II-16	-	덕월리 265전 일원	189	-		
-			II-17	-	덕월리 266-2임 일원	100	-		
II-15			-	II-15	덕월리 309-22임 일원	-	2,039	주차장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지번호		위 치 (남해군 남면)	면 적(m <sup>2</sup>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II-16	II	78,000	114,220	II-18	II-16	덕월리 309-16임 일원	4,503	4,554	도로
II-17				II-19	II-17	덕월리 322-1전 일원	655	2,190	
II-18				II-20	II-18	덕월리 323-17임 일원	3,815	3,999	
II-19				-	II-19	덕월리 307-17임 일원	-	688	
II-20				II-21	II-20	덕월리 307-11임 일원	706	142	원형녹지
II-21				-	II-21	덕월리 307-17임 일원	-	26	
II-22				II-22	II-22	덕월리 307-12임 일원	431	806	원형녹지 (폐지)
-				II-23	-	덕월리 307-5임 일원	718	-	
II-23				II-24	II-23	덕월리 307-10임 일원	126	126	원형녹지
II-24				II-25	II-24	덕월리 269-8임 일원	5,193	5,091	
II-25				-	II-25	덕월리 278전 일원	-	568	
II-26				II-26	II-26	덕월리 산13임 일원	8,657	9,294	
II-27				II-27	II-27	덕월리 323-11임 일원	5,353	5,123	원형녹지 (폐지)
II-28				II-28	-	덕월리 320-2임 일원	734	-	
				-	II-28	덕월리 340 일원	-	472	
II-29				-	II-29	덕월리 334임 일원	-	529	
II-30				II-30	II-30	덕월리 266-9임 일원	3,882	1,064	조성녹지
II-31				II-31	II-31	덕월리 266-2임 일원	104	104	
II-32				-	II-32	덕월리 산5-2임 일원	-	2,717	
II-33				-	II-33	덕월리 320-2임 일원	-	73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골프장 및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2 (신규)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직원숙소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3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클럽하우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4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골프장부대시설(축구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5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골프장부대시설(코스관리동)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6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골프장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8 (신규)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오수처리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2)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 ~ II-3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4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콘도미니엄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5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6 ~ II-8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9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콘도미니엄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0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콘도미니엄 부대시설(경비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11 (신규)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12 (신규)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륜	200% 이하	
		높 이	9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3 (신규)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피크닉장 및 부대시설(관광 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II-14 (신규)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관광안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의 공공편의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륜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 축 선	-	

남해군 고시 제2023-58호

##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고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 목적 : 항을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위 치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초전항 일원
4. 사업 기간 : 2021년 ~ 2023년
5. 총 사업비 : 9,756 (국비6,829.2, 지방비2926.8, 자부담96)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7. 사업 개요

○ 공통사업

- 방파제 연장사업 : 방파제 연장 55m
- 부잔교 조성사업 : 부잔교 조성 2EA
- 해안 안전시설 조성사업 : 파도막이 180m, 포장 A = 1,200m<sup>2</sup>
- 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 : 차단봉, CCTV 설치

○ 특화사업

- 초전 활력센터 조성
- 교통 편의시설 개선사업 : 주차장 조성, 종합안내판 설치
- 방풍림 정비 1식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해양발전과(어항관리팀, 055-860-3076)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초전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 면적(m <sup>2</sup> )	편입 면적(m <sup>2</sup> )	비 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초전활력센터	남해	미조	송정	525		양어장	737	737	
	남해	미조	송정	525	3	대	1320	132	
주차장 조성	남해	미조	송정	513		묘지	265	265	
	남해	미조	송정	513	1	도로	158	158	
	남해	미조	송정	514		전	811	811	
	남해	미조	송정	514	4	도로	74	74	
				계		6필지	14,303m <sup>2</sup>	12,452m <sup>2</sup>	

남해군 고시 제2023-59호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남 해 군 수

■ 지정 해제 고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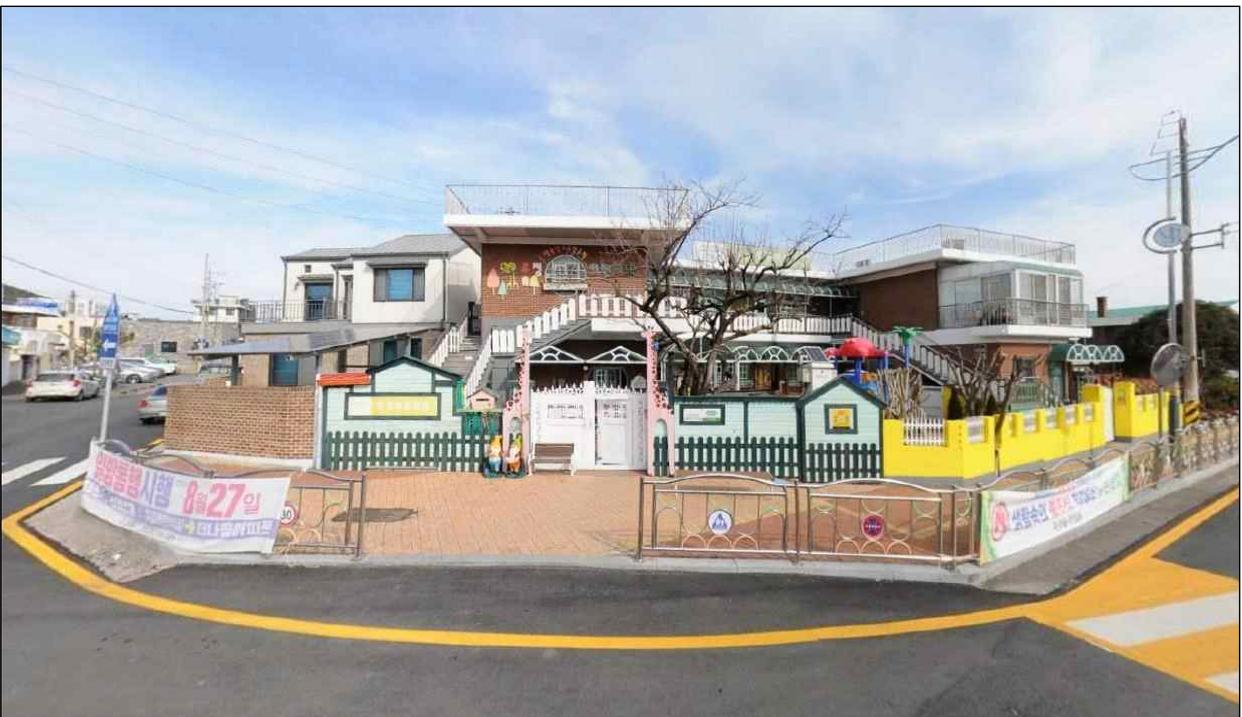
시설명	주소	지정해제 고시 사유	비고
우정어린이집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8번가길 9	폐원	

※ 보호구역 관련 문의처 : 남해군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860-3316

■ 위치도



■ 현장사업



남해군 고시 제2023-60호

##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6일

###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 목적 : 항을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위 치 : 남해군 저면 장항항 일원
4. 사업 기간 : 2021년 ~ 2023년
5. 총 사업비 : 7,377백만원(국비5,164, 지방비2,213, 자부담50)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7. 사업 개요

○ 공통사업

- 선착장 철거 : 선착장 철거 1식
- 돌제신설 : 돌제신설 70m
- 부잔교 설치 : 부잔교 설치 2개소
- TTP보강 1식

○ 특화사업

- 다목적센터 조성 : 노루목센터 조성, 화전농약 전수관 리모델링
- 안전회차로 조성 : 회차로 조성
- 안전시설 설치 : 안전난간, 안전조명, 안전보안등 설치
- 종합안내판 설치 : 마을입구 입간판, 통합안내 시설물 설치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해양발전과(어항관리팀, 055-860-3076)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sup>2</sup> )	편입 면적(m <sup>2</sup> )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선착장 철거	남해	서면	서상	1164	4	제방	260	260	
	남해	서면	서상	1164	3	제방	305	305	
노루목센터 조성	남해	서면	서상	1178	4	잡종지	678	678	
				계		3필지	1,243	1,243	

남해군 고시 제2023-61호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 남 해 군 수

1. 목적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하고자 함.

####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대상

연번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사업량		정비 계획	비고
	구분	명칭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연장 (m)	폭 (m)		
1	세천	아산 2세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좌: 561 우: 586	570	360	1.5	'23년 이후	남해읍 세천-0003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국·도비 지원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사유 :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시설 지정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23. 4. 28.

5.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3-62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531 외 28건

연번	종 전 주소	도로명 주소	효력발생일	비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4~3022)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지정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업무구분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표적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183-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531	20230426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신진리 99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645	20230426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99-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312-37	20230425	20090427	수용형새끼꽃과 같이 있다 하여 큰 마을이라는 큰 새 봉지와 화자를 모아 봉화로 붙였음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525-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6	2023042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525-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	2023042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364-4, 361-4, 36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364번길 44-4	20230424	20090427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길리 565-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983-37	20230421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풍산리 220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577번길 122-28	20230421	20100915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물리 32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930-52	20230421	20090427	고려 충신왕때 개장한 흥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82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244	20230420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대정리 153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475번길 79-22	20230420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47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로 208	20230420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섬의 모양이 벌같이 생긴 데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77-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신소로76번길 83	20230420	20230420	신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길리 130-4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131-20	20230418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734-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227	20230418	20090427	남해의 특산품인 죽방렴 멸치가 생산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1049-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68-50	20230418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25-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538번길 31	20230418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천리 86-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389-77	20230417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길리 64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42번길 38-34	20230417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천리 242-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370-16	20230417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천리 68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천로173번길 17-30	20230414	20091023	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언죽리 788-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388-14	20230414	20090427	진지촌런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649-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 211	20230413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왜구의 침입에도 피해가 가지 않은 데에서 유래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46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화방로492번길 102	20230410	20090427	화방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124-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민운로 159	20230407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민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380-2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204번길 18-41	20230406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46-10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790번길 103	20230404	20090427	흥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74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990번길 40	20230404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29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76-16	2023040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597호

큰양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큰양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와 관련,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1.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위 치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290 일원
- 다. 사 업 량 : 급경사지 정비 L=250m
- 라. 사 업 기 간 : 2023. 1. ~ 2024. 12.
- 마. 공사시행자 : 경남 남해군

2. 편입토지 내역 : 개별통지문 발송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91-2번지 외 6필지 4,233㎡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 참조,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3. 4. 20. ~ 2023. 5. 4. (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다) 이의신청 :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으로 서면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2년 8월 ~ (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 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은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다) 보상금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①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 시 3인)
  - ②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이의제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 이사, 수령거부,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55-860-32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3-604호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내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되, ‘만’ 표시는 삭제함.
  - 나. 일괄개정 조례 목록

부서명	팀명	제 명
행정과	행정팀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장사행정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과	지역개발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건설교통과	교통팀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하수도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건강증진과	치매예방팀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남해군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5월 1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전화 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3조(「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4조(「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화장장의 내용란 중 “만15세”를 각각 “15세”로 한다.

제5조(「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목 청소년 중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를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목 어린이 중 “만 3세 이상 만 12세 미만”을 “3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을 “1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소인 중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7세 이상 18세 이

하” 로 하고, 같은 대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소인 중 “만 7세 이상 만18세” 를 “7세 이상 18세” 로 하고, 같은 목 대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만 5세” 를 “5세” 로 한다.

**제6조(「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고란 중 “만 3세” 를 각각 “3세” 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만 5세” 를 “5세” 로 한다.

**제7조(「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를 “7세 이상 12세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를 “13세 이상 18세 이하” 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를 “19세 이상 64세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만 18세” 를 “18세”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 를 “10세 이상 55세 이하” 로 한다.

**제8조(「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2호 중 “만 18세” 를 “18세” 로 한다.

**제9조(「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10조(「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5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한다.

**제11조(「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만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12조(「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만 60세” 를 “60세” 로 한다.

제14조(「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어린이 중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 를 “7세 이상 12세 이하” 로 하고, 같은 표 청소년 중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를 “13세 이상 18세 이하” 로 하며, 같은 표 성인 중 “만19세” 를 “19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606호

##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남해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사항(안 제1조)
  - 나.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4월 25일 ~ 2023년 5월 15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수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우)52425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수산자원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363, FAX : 055-860-370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스마트양식팀(☎055-860-3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면허종류별, 어업종류별, 양식업종류별,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제2조 관련)

(1) 어장 관리선 지정의 정수

어업면허의 종류	어업의종류	어장 규모(면적)	정수	비 고
정치망어업	정치망	소형 (1ha 미만)	1척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어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소형 (1ha이상~5ha미만)	2척	
		중형 (5ha이상~10ha미만)	2척	
		대형 (10ha이상)	3척	
마을어업	마을어업	10ha미만	2척	마을어업권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척까지 지정 받을 수 있다.
		10ha이상~30ha미만	3척	
		30ha이상	4척	

(2) 면허양식장 관리선 지정의 정수

양식업면허의 종류	양식업의 종류(방법)	양식장 규모(면적)	정수	비 고
해조류 양식어업	수하식,바닥식	10ha 미만	1척	*정수는 단독소유를 기준으로 한다. *양식업권의 공유자 및 적법한 행사자는 1척을 지정받을 수 있다.
		10ha 이상	2척	
패류 양식어업	수하식	10ha 미만	1척	
		10ha 이상	2척	
	바닥식	5ha 미만	1척	
		5ha 이상~10ha 미만	2척	
		10ha 이상	3척	
	가두리식	5ha 미만	1척	
5ha 이상		2척		
어류등 양식어업	가두리식	1ha 미만	1척	
		1ha 이상 ~ 2ha 미만	2척	
		2ha 이상	3척	
	수하식,바닥식, 축제식	10ha 미만	1척	
		10ha 이상	2척	
복합양식어업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협동양식어업	해당 양식업 종류 · 방법별 정수에 따른다.			

(3) 관리선의 사용 승인 정수 및 승인 기준

어장 및 양식장의 관리선 사용 승인의 정수는 두지 않는다. 다만, 어장 및 양식장의 규모, 사용목적, 해당어장의 관리선 지정 현황 등을 판단하여 승인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23-621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의 규정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용어 변경, 제도개선 사항 반영 등

3. 주요 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제37조제12항)

나. 청소관리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 신설(안 제46조 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 반영(안 제47조, 제48조, 제53조)

라. 상위법령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제27조, 안제32조의제3항 )

– 기존) “실경작자” → 변경) “농업인”

– 기존) “사용·수익허가” → 변경) “사용허가”

4. 입법예고 기간 : 2023. 4. 27. ~ 2023. 5. 16.(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6일 18:00까지 남해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860-3152, FAX : 055-860-37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 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37조제4호 후단 중 “「남해군 계획 조례」” 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을 보아 일반입찰로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

제47조 중 “군수·부군수” 를 “부군수” 로 한다.

제4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9조 단서 중 “1급·2급” 을 “2급” 으로 한다.

제53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나목 휴게실란 다음에 청소근로자 휴게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소근로자 휴게실	1.5㎡ x 담당 근로자 수	성별 구분, 최소면적 6㎡ 이상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제46조 관련)

1. 군 본청 및 읍면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원
군 본청	99	38.88	-	17.92	7.65	7.2
읍청사	33	17.92	-	17.92	7.65	7.2
면청사	3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sup>2</sup>)

실명		설계기준					비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m <sup>2</sup> ×사용인원	
	4~2.4m <sup>2</sup> /인	2.6~1.5m <sup>2</sup> /인	2~1.2m <sup>2</sup> /인	1.6~1m <sup>2</sup> /인	1.2~0.9m <sup>2</sup> /인		
상황실(군)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sup>2</sup> / 인	0.40m <sup>2</sup> / 인		0.33m <sup>2</sup>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sup>2</sup> ) × 대수					
식당		1.63m <sup>2</sup>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m <sup>2</sup> × 공무원 수 × 0.15					
청소근로자 휴게실		1.5m <sup>2</sup> × 담당 근로자 수					성별 구분, 최소면적 6m <sup>2</sup> 이상
민원실		{(6.55m <sup>2</sup>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sup>2</sup> ~0.2m <sup>2</sup>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 인	11.52m <sup>2</sup> / 인		8.64m <sup>2</sup> / 인			
자료실		(0.3~0.4m <sup>2</sup> ) × 공무원수					
창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산실		9.79m <sup>2</sup>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층장비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 ~ 40%]

2. ~ 5. (생 략)

남해군 공고 제2023-626호

##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등에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설치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예산 편성 등 지원기준(안 제6조~제9조)
  - 라.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처: 남해군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 주소: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전화: 055)860-3295, 팩스 055)860-3727
-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전화 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점유·관리하는 주택 및 소규모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 2.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 3.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침수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소규모 상가
-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소규모상가
-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거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지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지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642호

## 군도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로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주민·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군도7호선 선형개량공사(소량교)
- 위 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41-3번지 일원
- 사 업 내 용 : 교량재가설 B=8m, L=16m, 접속도로 L=70m
-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
- 사 업 기 간 : 2023. 5. ~ 2024. 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공사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 열람 장소 비치

4. 공고기간 : 2023. 5. 1. ~ 2023. 5. 15 . (14일간)

###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 출 기 간 : 공고기간 내
- 제 출 장 소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제 출 방 법 :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우편,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계				16,703	1,498			
1	상주면 양아리	642	답	327	327	남해군		
2	상주면 양아리	641-3	답	474	474	남해군		
3	상주면 양아리	641-2	도로	56	56	박**	***	
4	상주면 양아리	1950	구거	8,639	167	농림축산식품부		
5	상주면 양아리	1954	도로	6,787	54	국토교통부		
6	상주면 양아리	743-3	답	20	20	김**	***	
7	상주면 양아리	763-1	답	48	48	김**	부산 영도구 ***	
8	상주면 양아리	762-3	전	4	4	박**		
9	상주면 양아리	743-2	도로	195	195	남해군		
10	상주면 양아리	762-4	도로	36	36	남해군		
11	상주면 양아리	744-2	도로	66	66	남해군		
12	상주면 양아리	761-3	도로	51	51	김**	***	

남해군 공고 2023-654호

### 2023-2024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문

수산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승인된 2023/2024년 어장(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 남 해 군 수

####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 내역

##### 【 마을어업 】

##### - 재 개발

순번	시군	면허 번호	어업의 명 칭	어업 종류	포획· 채취물	수면 위치	현어장 면적(ha)	재개발 면적(ha)	승인결과
소계	4건						71.73	71.13	승인 4건
1	남해군	남해마을 제138호	마을 어업	마을 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실천 덕신	12.33	12.33	승인
2	남해군	남해마을 제139호	마을 어업	마을 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창선 당항	12.2	11.6	승인
3	남해군	남해마을 제153호	마을 어업	마을 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서면 작장	17.3	17.3	승인
4	남해군	남해마을 제180호	마을 어업	마을 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창선 냉천	29.9	29.9	승인

□ 면허양식장개발계획 승인 결정 내역

【 양식업 】

- 재 개 발

순번	시군	면허 번호	어업의 명 칭	양식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현어장 면적(ha)	재개발 면적(ha)	승인결과
소계	27건						680	680	승인 23건 조건부 승인 4건
1	남해군	남해양식 제227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	5.00	승인
2	남해군	남해양식 제228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	5.00	승인
3	남해군	남해양식 제229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설천 진목	3.00	3.00	승인
4	남해군	남해양식 제230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고현 갈화	10.00	10.00	승인
5	남해군	남해양식 제231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고현 차면	10.00	10.00	승인
6	남해군	남해양식 제232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	5.00	승인
7	남해군	남해양식 제233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설천 진목	5.00	5.00	승인
8	남해군	남해양식 제234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설천 진목	3.00	3.00	승인
9	남해군	남해양식 제238호	어류등 양식	수하식 (연승식)	멍게	남면 홍현	3.00	3.00	승인
10	남해군	남해양식 제239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서면 중현	4.00	4.00	승인
11	남해군	남해양식 제240호	패류 양식	바닥식 (투석식)	전복	이동 원천	2.00	2.00	조건부 승인 (마을어장과 중첩면적 해소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준수하여 면허처분)
12	남해군	남해양식 제241호	패류 양식	바닥식 (투석식)	전복	상주 상주	2.00	2.00	승인
13	남해군	남해양식 제242호	패류 양식	바닥식 (투석식)	전복	서면 서상	1.50	1.50	승인
14	남해군	남해양식 제243호	패류 양식	바닥식 (투석식)	전복	서면 작장	2.00	2.00	승인
15	남해군	남해양식 제244호	패류 양식	바닥식 (투석식)	전복	창선 적량	1.50	1.50	승인
16	남해군	남해양식 제245호	패류 양식	바닥식 (투석식)	전복	남면 선구	1.00	1.00	조건부 승인 (마을어장과 중첩면적 해소 후 면허처분)
17	남해군	남해양식 제246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삼동 영지	5.00	5.00	승인

18	남해군	남해양식 제247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삼동 금송	4.00	4.00	승인
19	남해군	남해양식 제248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창선 지족	3.00	3.00	조건부 승인 (마을어장과 중첩면적 해소 후 면허처분)
20	남해군	남해양식 제249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남면 덕월	1.00	1.00	승인
21	남해군	남해양식 제250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바지락	서면 정포	10.00	10.00	승인
22	남해군	남해양식 제251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	5.00	승인
23	남해군	남해양식 제252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서대	5.00	5.00	승인
24	남해군	남해양식 제253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서대	5.00	5.00	승인
25	남해군	남해양식 제254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	5.00	조건부 승인 (양식산업발전법시 행령 제8조제4항 준수하여 면허처분)
26	남해군	남해양식 제329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서면 유포	9.90	9.90	승인
27	남해군	남해양식 제330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소벽	4.00	4.00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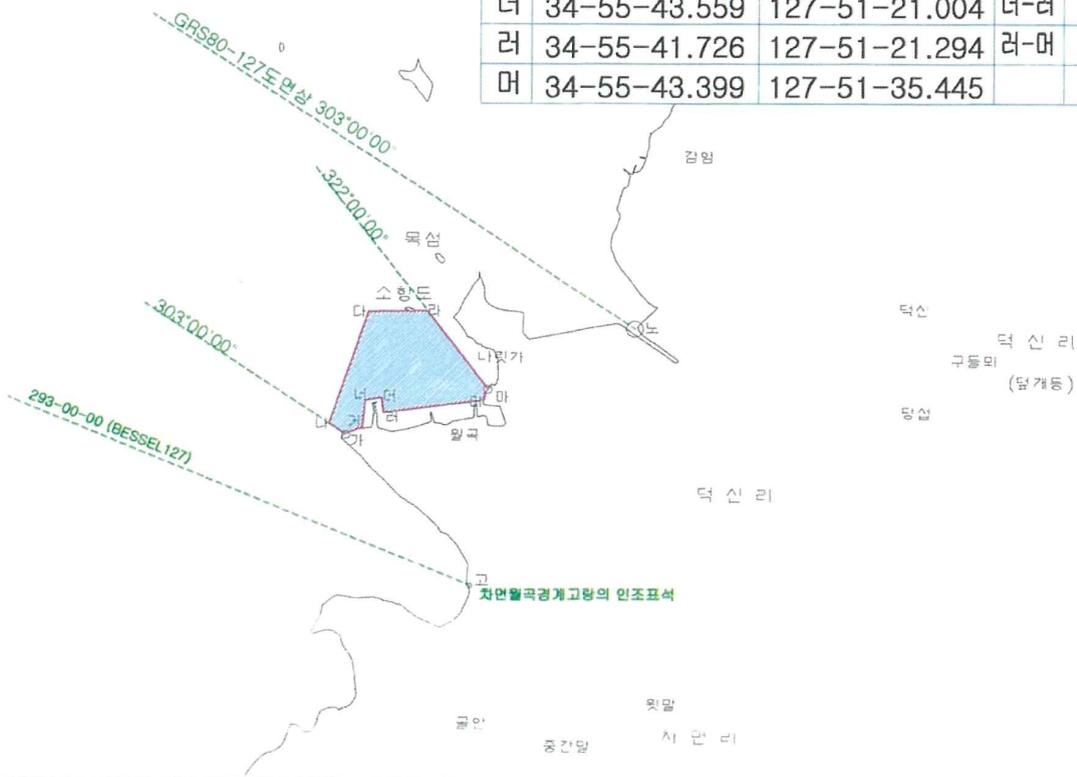
- 대체개발

순번	시군	현 어 장						대체어장		승인결과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물	면적 (ha)	어장 위치	소유자	위치	면적 (ha)	
소계	2건				15.00				15.00	조건부 승인 2건
1	남해군	남해양식 제320호	패류 양식	새꼬막	10.00	이동 초음	어촌계	이동 초음	10.00	조건부 승인 (양식장 환경개선 후 면허처분)
2	남해군	남해양식 제593호	패류 양식	새꼬막	5.00	이동 초음	개인	이동 초음	5.00	조건부 승인 (양식장 환경개선 후 면허처분)

## 남해마을어업 면허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마을어업 축척: 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월곡지선
4. 기점 및 각점 :
  - (고): 차면월곡경계고랑의 인조표석 (N34-55-20.80, E127-51-33.82)
  - (노):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1(천)번지하류중앙지류의 덕신대교해안쪽 가장자리 (N34-55-52.29, E127-51-56.9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마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가~머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은 제외
6. 어장의 면적 : **123,300 m<sup>2</sup>**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5-39.021	127-51-16.045	가-나	75
나	34-55-40.362	127-51-13.585	나-다	443
다	34-55-54.019	127-51-19.012	다-라	209
라	34-55-54.187	127-51-27.231	라-마	366
마	34-55-44.772	127-51-36.030		
거	34-55-39.802	127-51-18.334	거-너	106
너	34-55-43.230	127-51-18.722	너-더	59
더	34-55-43.559	127-51-21.004	더-러	57
러	34-55-41.726	127-51-21.294	러-머	363
머	34-55-43.399	127-51-35.445		



### 남해마을어업 면허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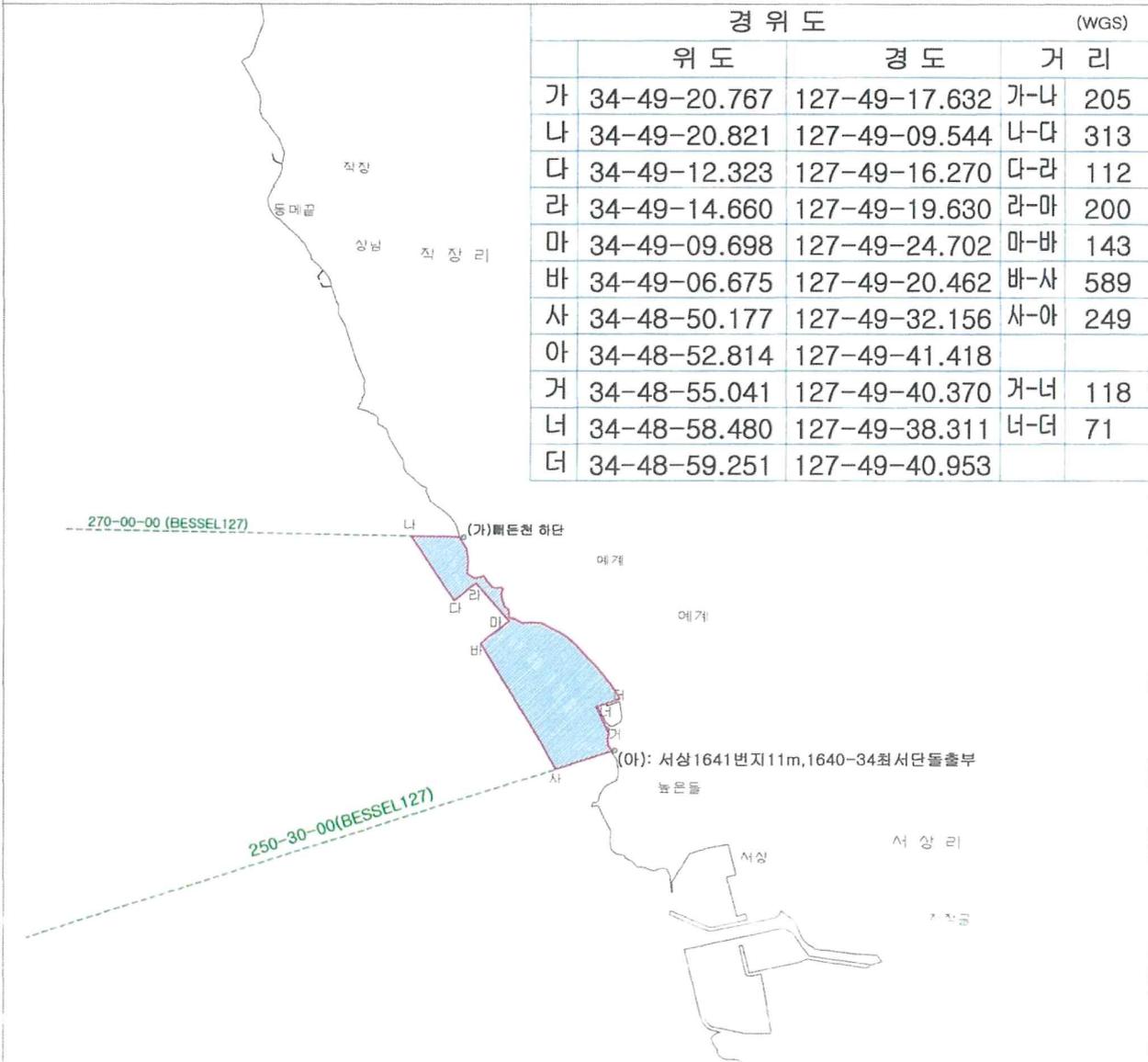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마을어업 축 척: 1/25,000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당항지선
- 4. 기점 및 각점 :  
 (파)창선면 동대리 산2번지(임)의 최동북단 동외끝, 인조표시(N34-53-23.98, E128-00-57.05)  
 (하)창선면 당항리 309번지의 중앙, 어촌체험안내소앞 가드레일 기둥 (N34-54-02.59, E128-01-23.47)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타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자~차는 육지해안선으로 연결
- 6. 어장의 면적 : 116,000 m<sup>2</sup>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점간거리
가	34-53-58.38	128-01-18.72	가나 268
나	34-53-51.70	128-01-25.49	나다 273
다	34-53-57.45	128-01-33.68	다라 90
라	34-53-55.93	128-01-36.71	라마 369
마	34-53-49.00	128-01-24.86	마바 216
바	34-53-50.99	128-01-16.68	바사 230
사	34-53-44.25	128-01-12.72	사아 120
아	34-53-47.65	128-01-10.40	아자 16
자	34-53-47.36	128-01-09.85	
차	34-53-45.01	128-01-06.93	차카 130
카	34-53-41.68	128-01-10.12	카타 285
타	34-53-39.46	128-00-5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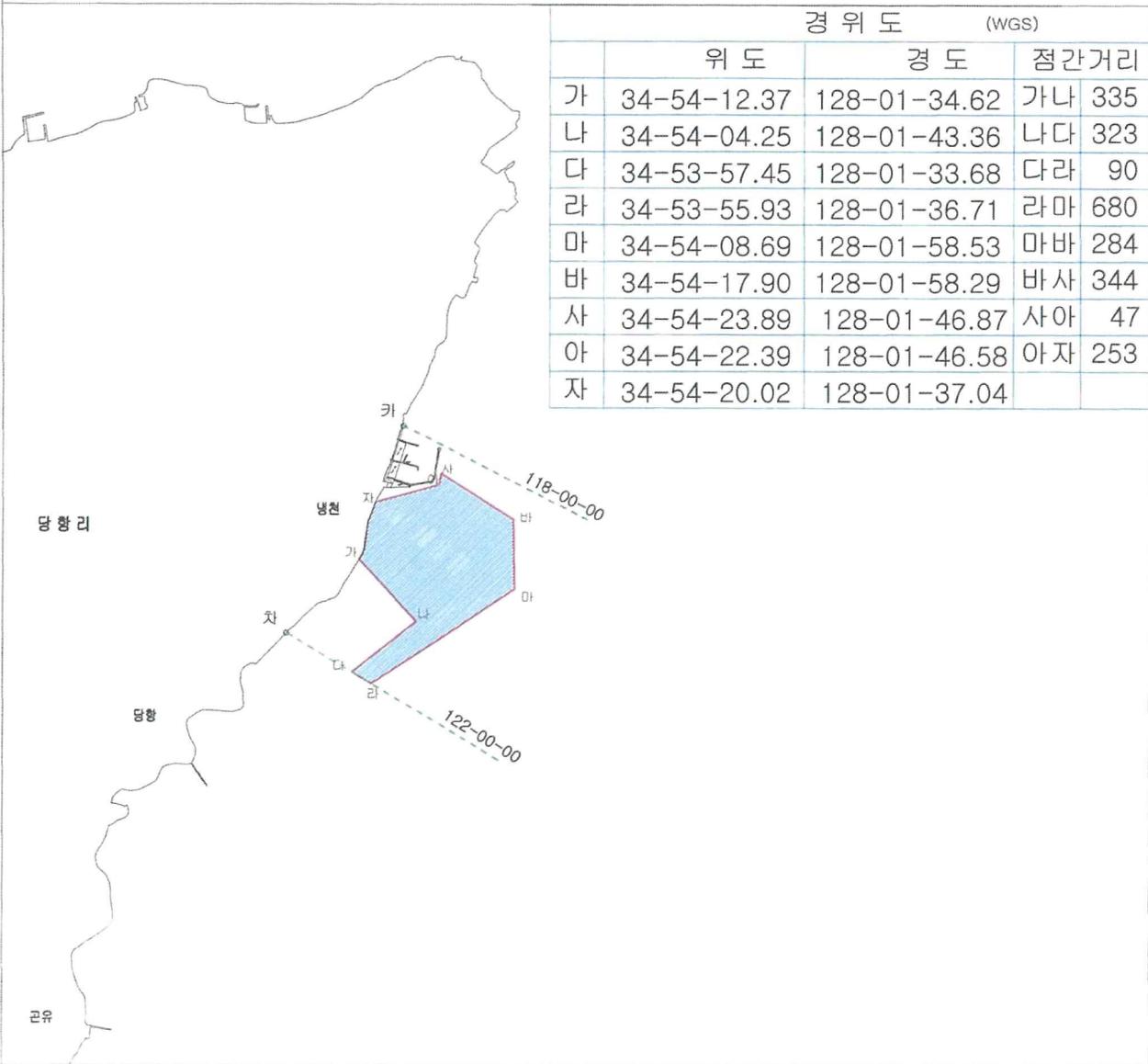
## 남해마을어업 면허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마을어업 축척: 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예계지선
4. 기점 및 각점 :
  - (가): 뽕은천 하단 (N34-49-20.77, E127-49-17.63)
  - (아): 서상1641번지11m,1640-34좌서단돌출부(N34-48-52.81, E127-49-41.4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아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가~더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은 제외
6. 어장의 면적 : **173,000 m<sup>2</sup>**



### 남해마을어업 면허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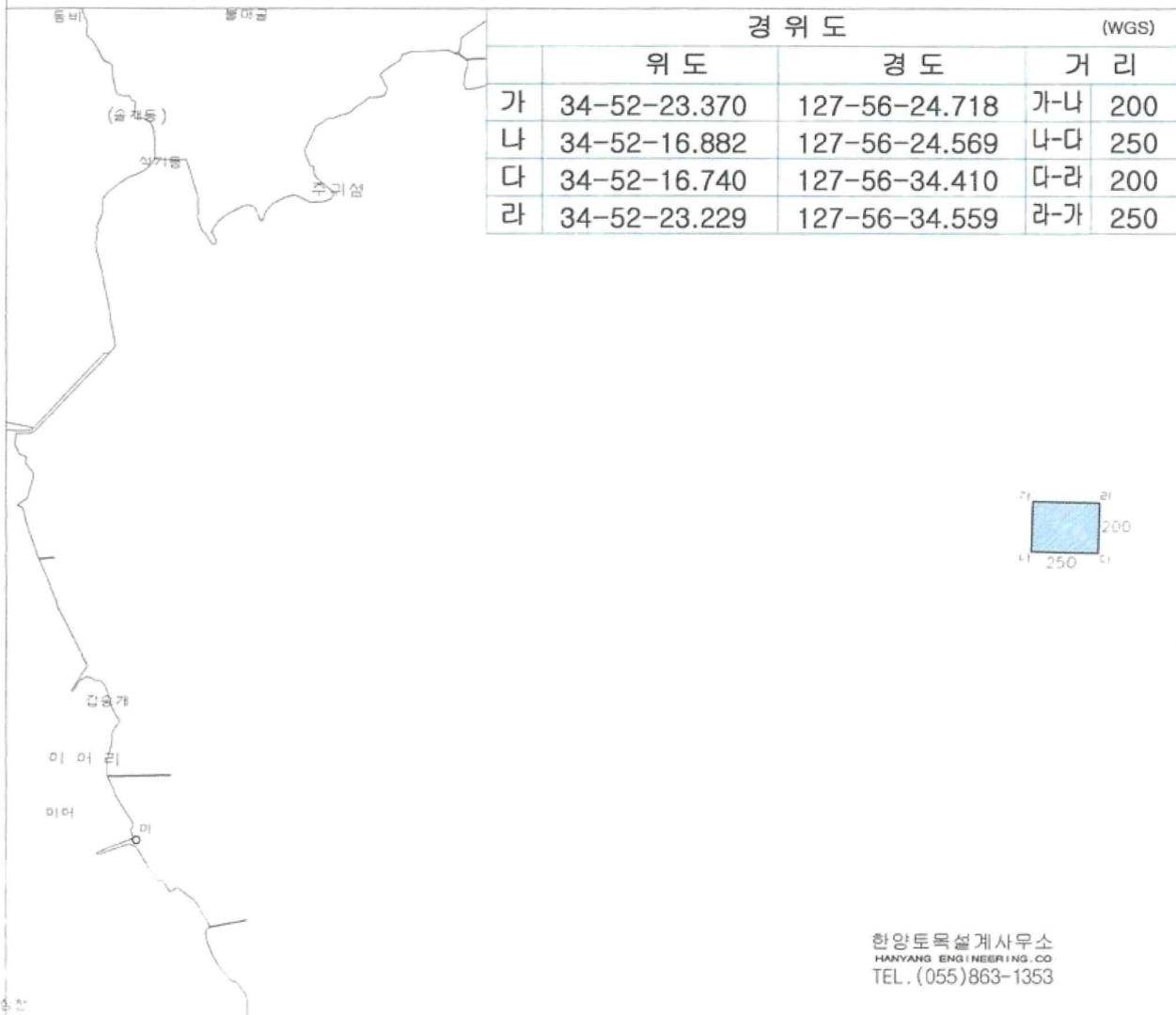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마을어업 축 척: 1/25,000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냉천지선
- 4. 기점 및 각점 :  
 (차)창선면 당항리 309번지의 중앙, 어촌체험안내소앞 가드레일 기둥  
 N 34-54-02.59, E 128-01-23.47  
 (카)창선면 대벽리 1075번지(구)의 최남단, 냉천단항사이 다리목  
 N 34-54-30.20, E 128-01-41.14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자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어장의 면적 : 299,000 m<sup>2</sup>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 (마) N 34-51-38.069, E 127-54-09.58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 척 :  $\frac{1}{25,000}$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 (마) N 34-51-38.069, E 127-54-09.58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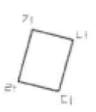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닥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마) N 34-53-30.20, E 127-55-30.3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적 : 30,000 m<sup>2</sup>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리
가	34-53-17.78	127-56-49.75	가-나 150
나	34-53-16.58	127-56-55.47	나-다 200
다	34-53-10.29	127-56-53.52	다-라 150
라	34-53-11.50	127-56-47.80	라-가 200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화전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마) N 34-53-15.86, E 127-49-47.93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0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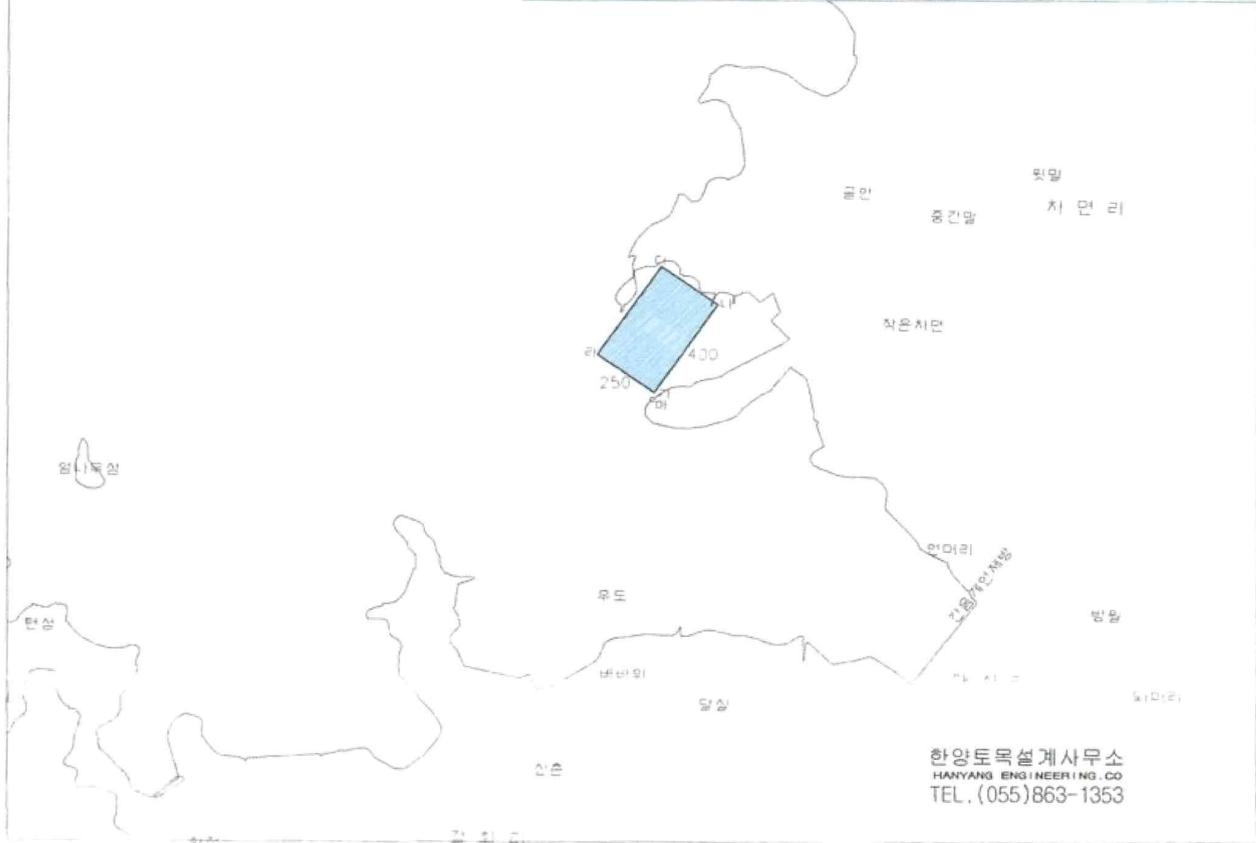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차면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 (마) N 34-54-38.59, E 127-51-05.6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0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4-39.477	127-51-05.896	가-나 400
나	34-54-50.243	127-51-14.782	나-다 250
다	34-54-54.775	127-51-06.651	다-라 400
라	34-54-44.009	127-50-57.764	라-가 250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마) N 34-53-16.40, E 127-55-06.67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마) N 34-53-16.40, E 127-55-06.67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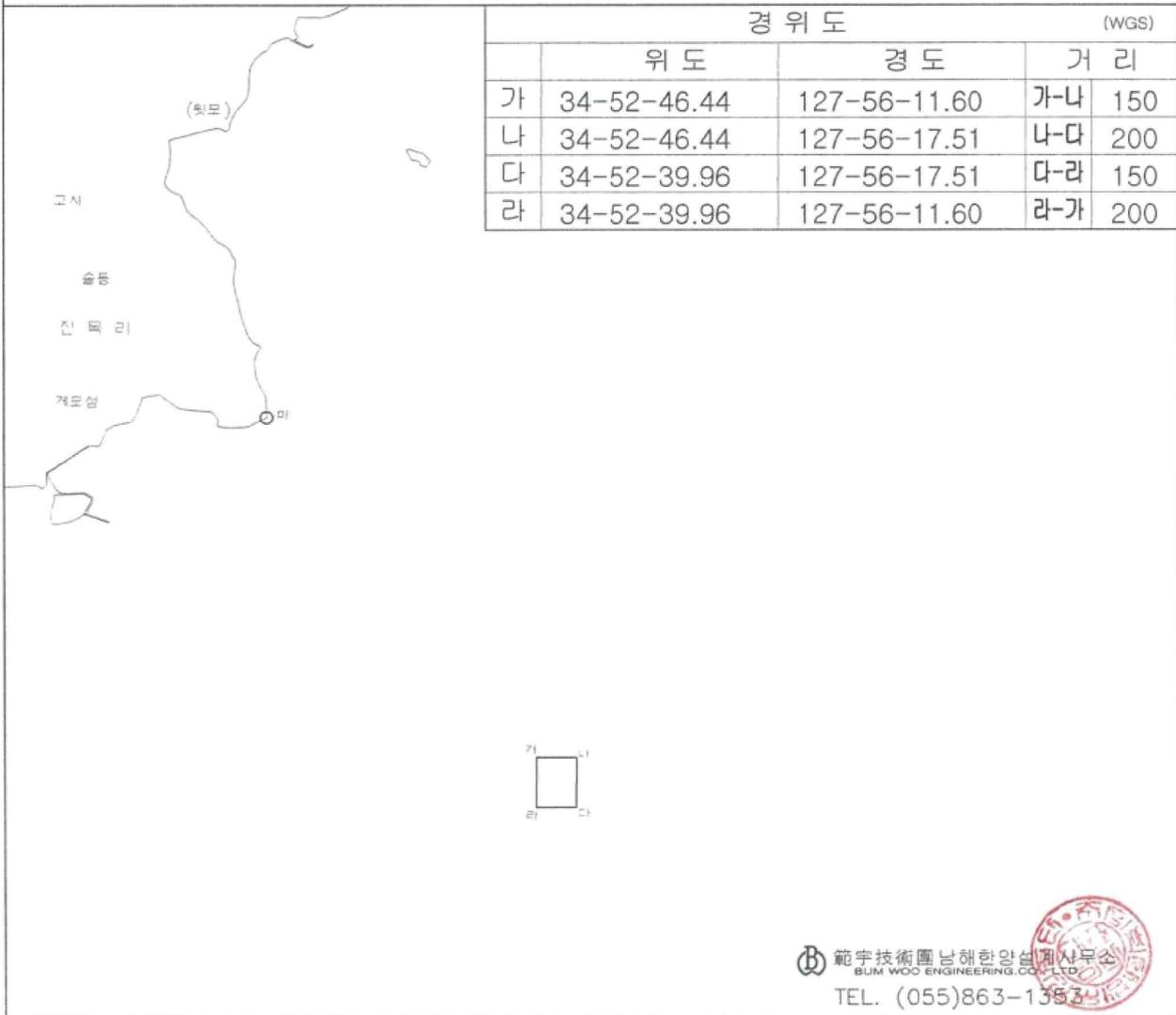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척 :  $\frac{1}{25,000}$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닥식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지선
-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 (마) N 34-53-30.20, E 127-55-30.34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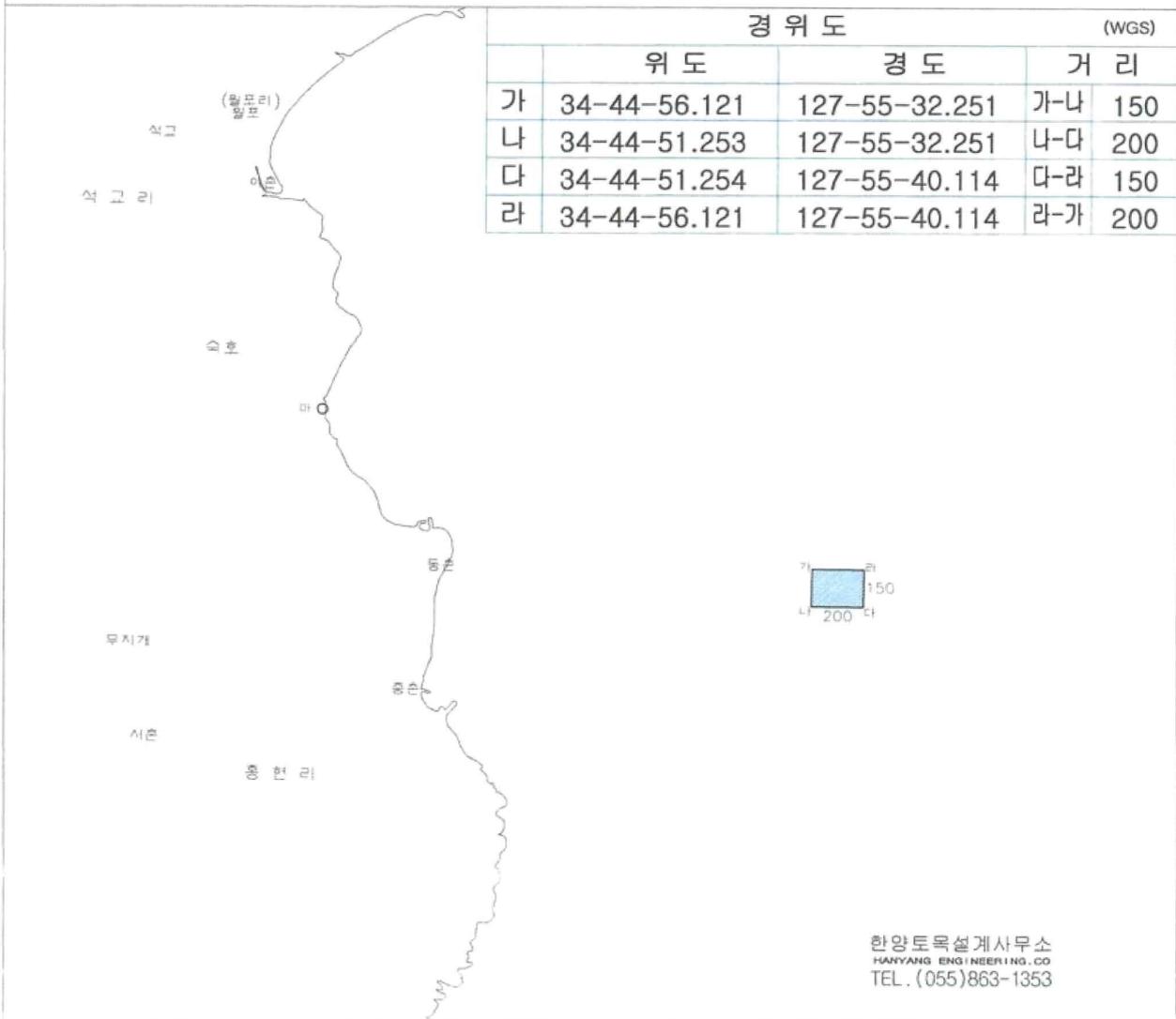
6. 면적 : 30,000 m<sup>2</sup>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남면 흥현리
  - (마) N 34-45-16.008, E 127-54-17.98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3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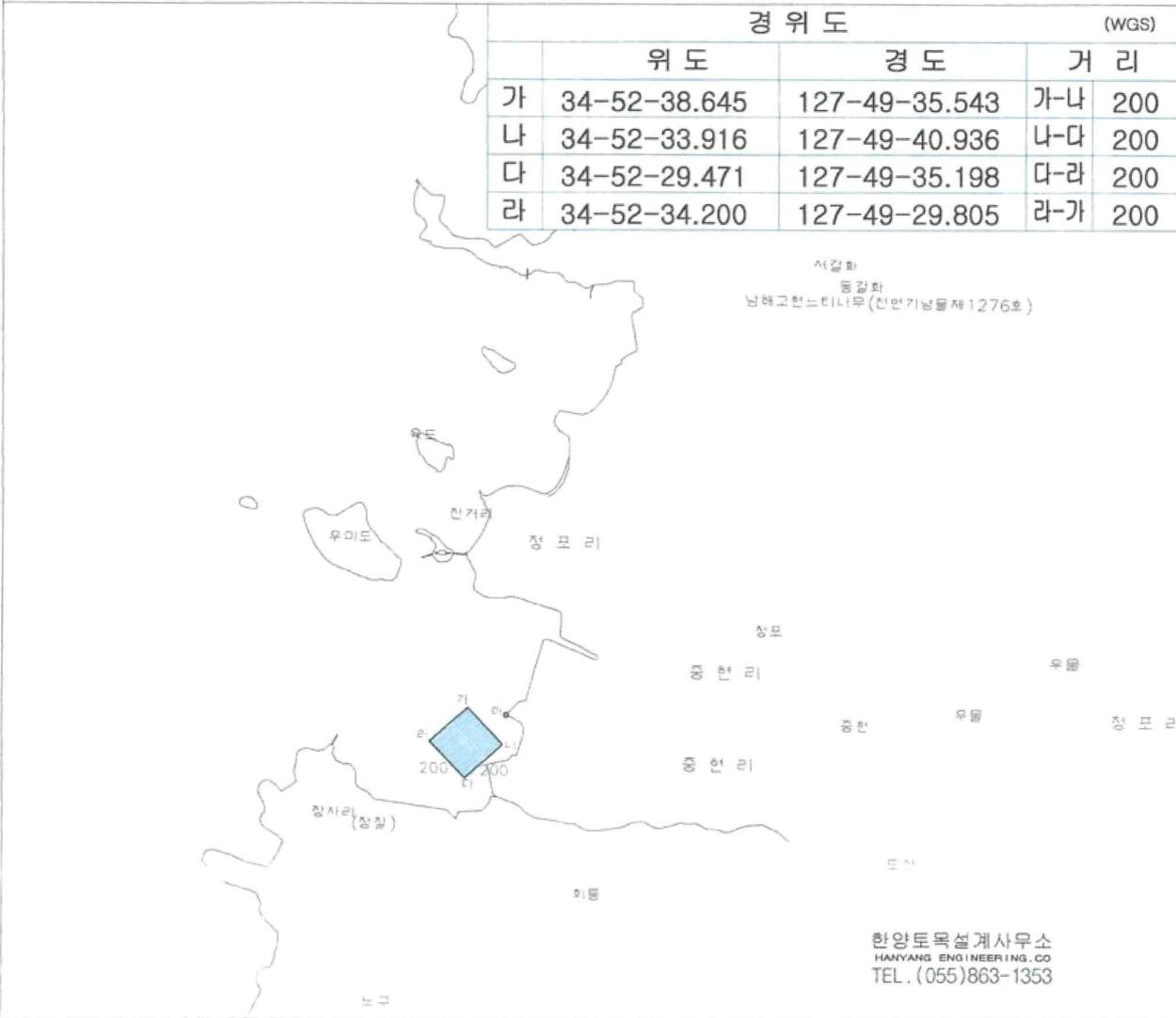


# 남해양식 제 호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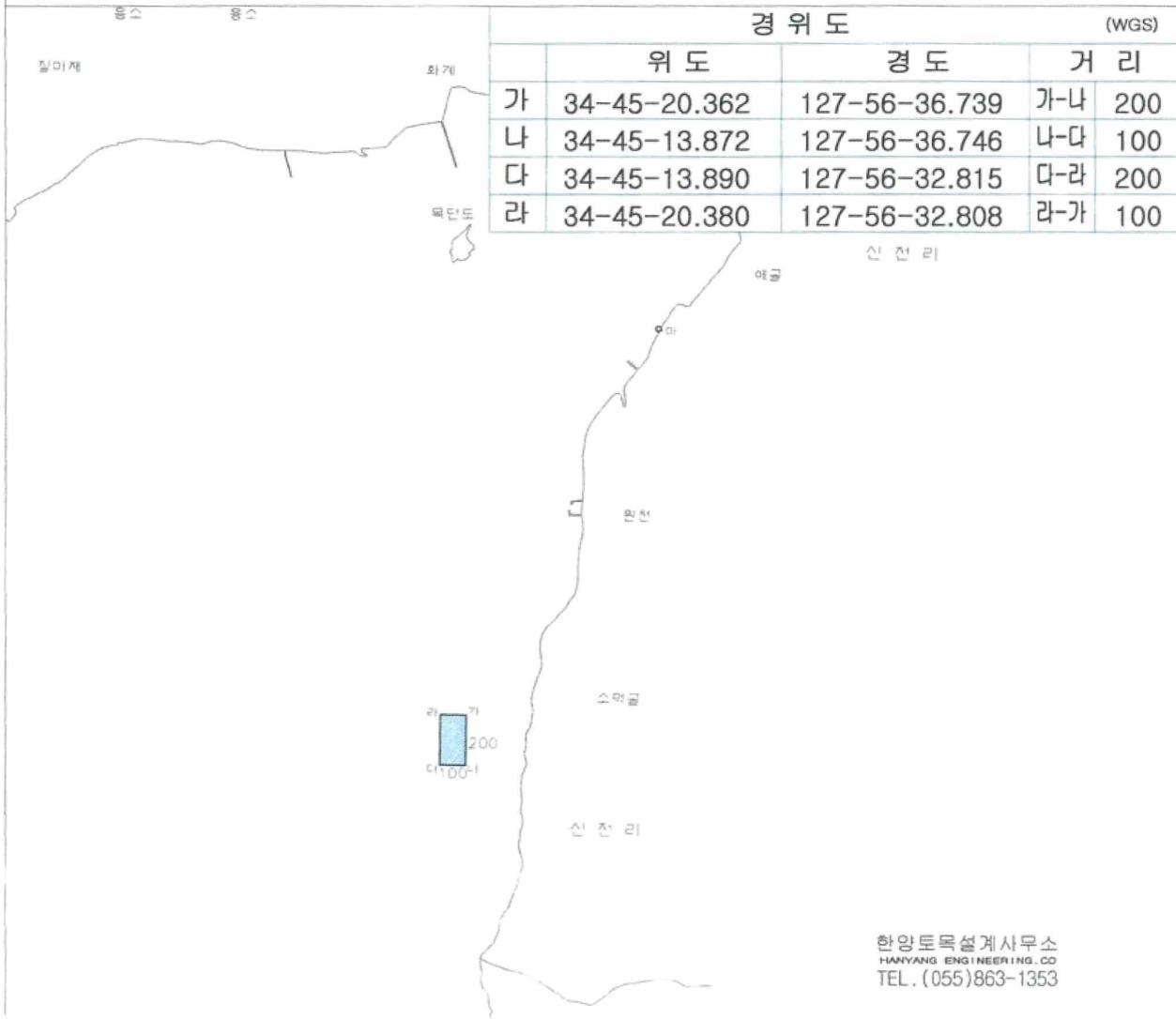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회룡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서면 중현리
  - (마) N 34-52-37.75, E 127-49-41.47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4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투석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원천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 (마) N 34-46-10.39, E 127-57-05.0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투석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금포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마) N 34-43-24.08 E 128-00-39.9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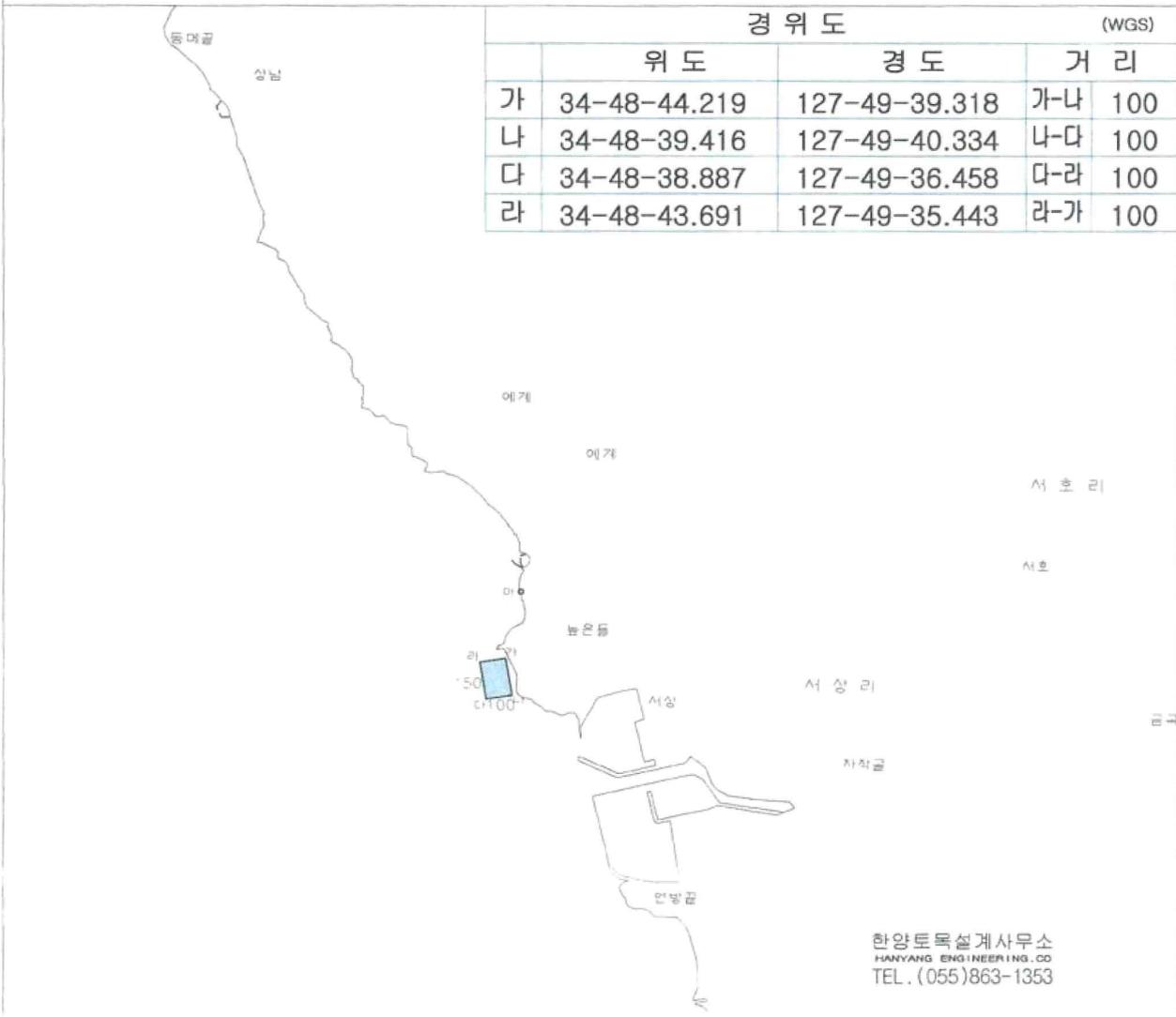
축척 :  $\frac{1}{25,000}$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투석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서상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 남해군 서면 서상리
  - (마) N 34-48-52.81, E 127-49-41.4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5,000 m<sup>2</sup>

축 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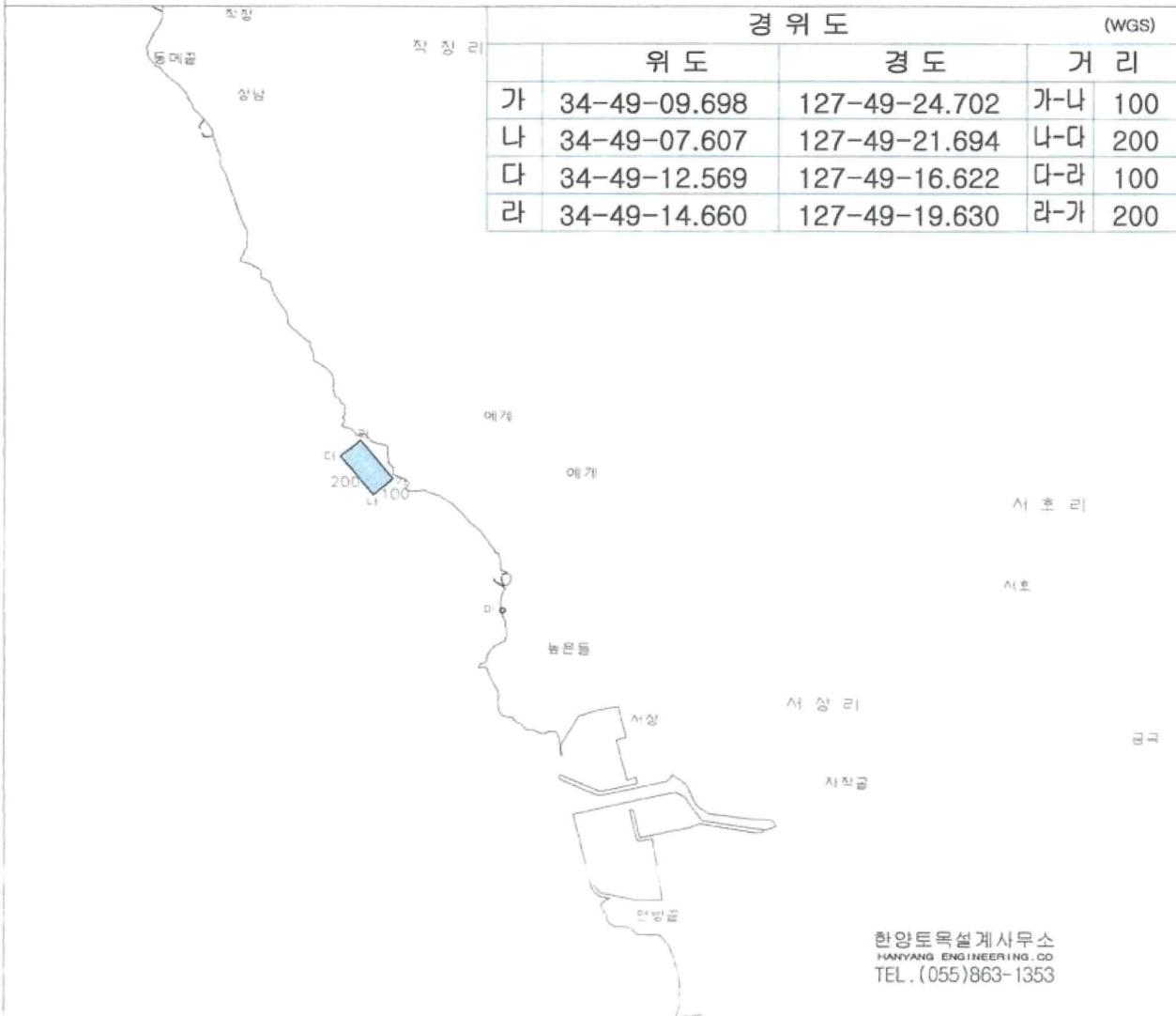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투석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예계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서면 작장리
  - (마) N 34-48-52.81, E 127-49-41.4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0,000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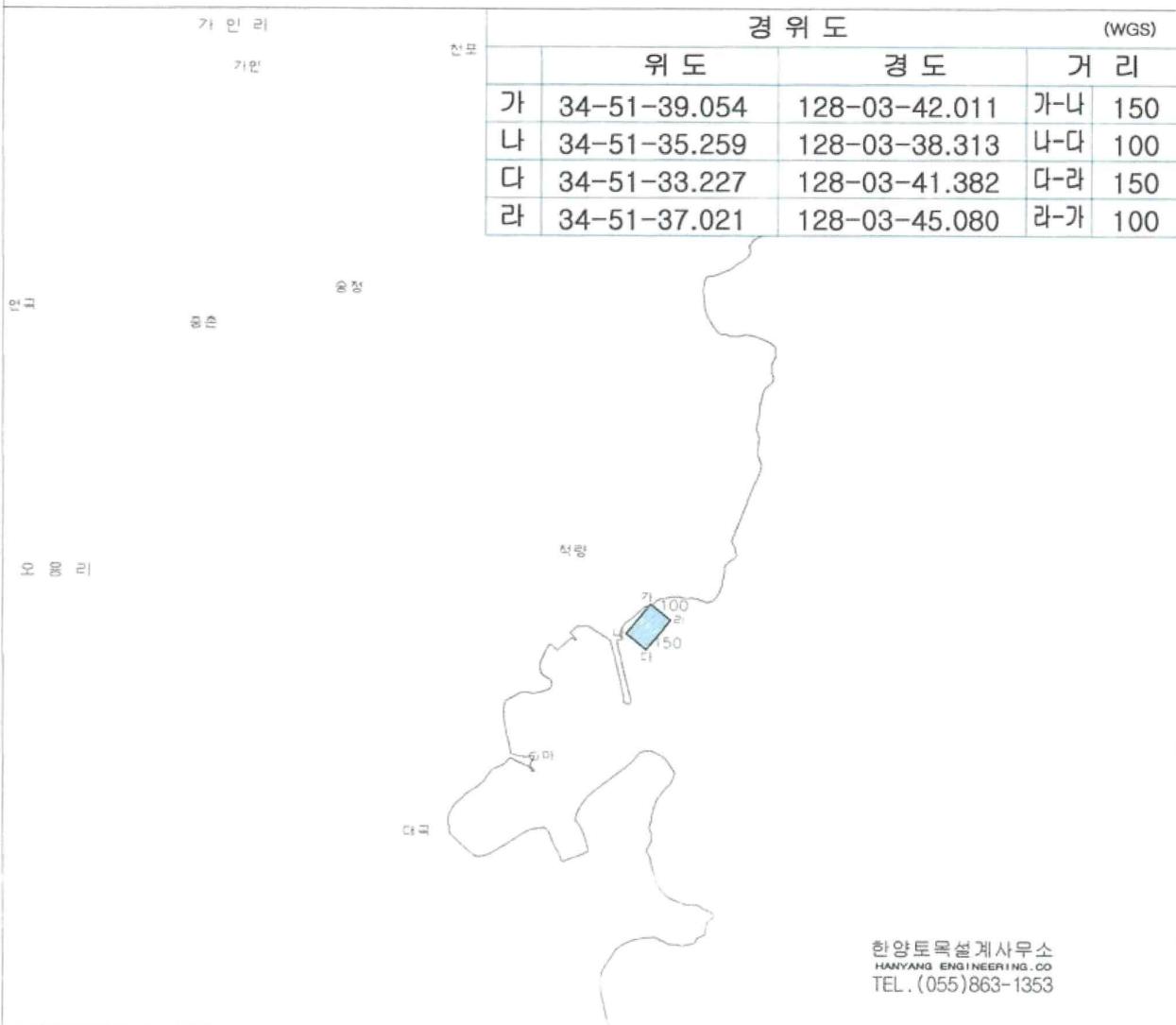
축척 :  $\frac{1}{25,000}$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투석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적량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 (마) N 34-51-19.292 E 128-03-24.69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5,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투석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사촌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남면 임포리
  - (마) N 34-44-52.56, E 127-51-11.08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0,000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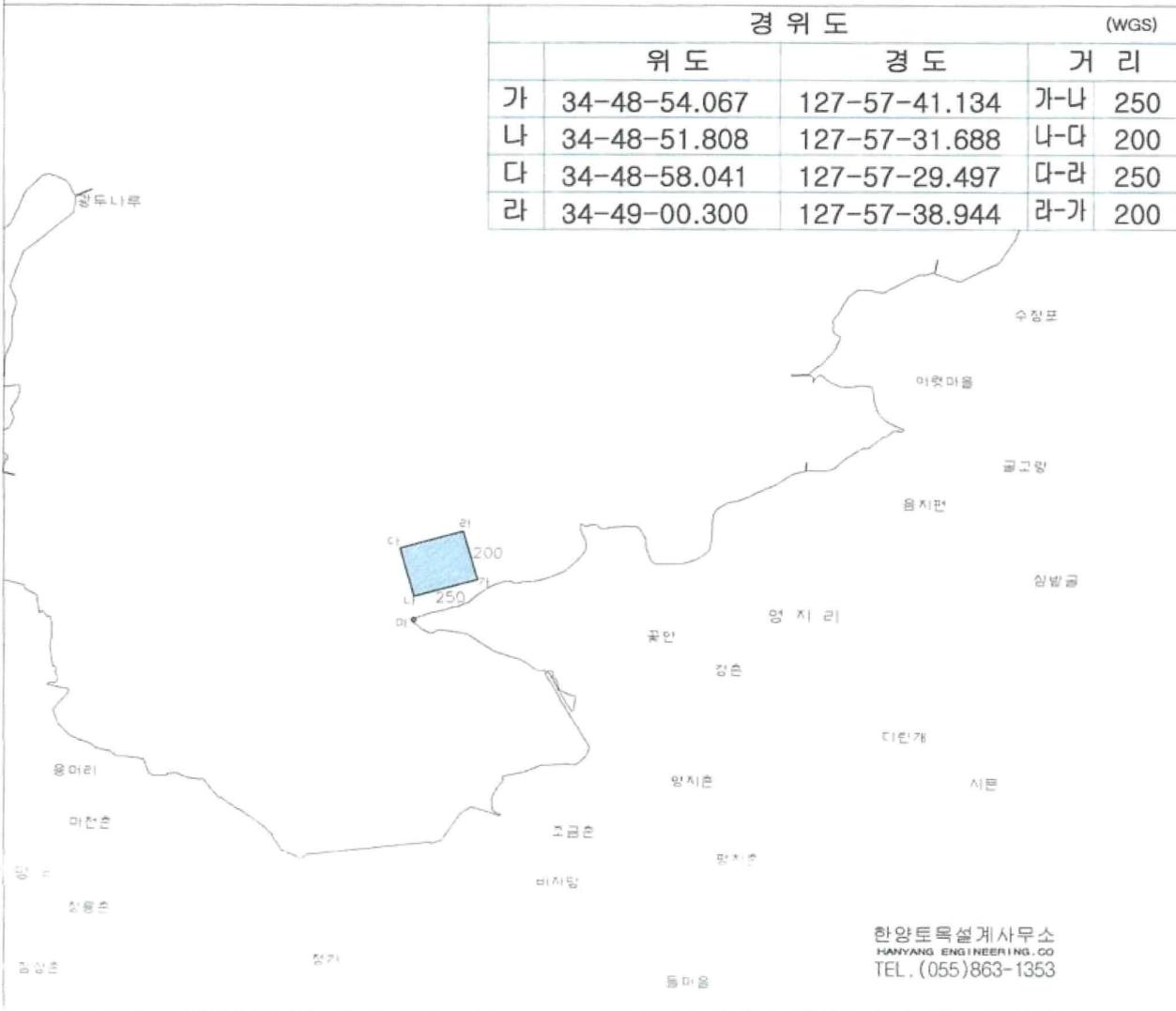
축척 :  $\frac{1}{25,000}$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영지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 (마) N 34-48-48.76, E 127-57-31.71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전도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 (마) N 34-49-48.28, E 128-01-00.68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4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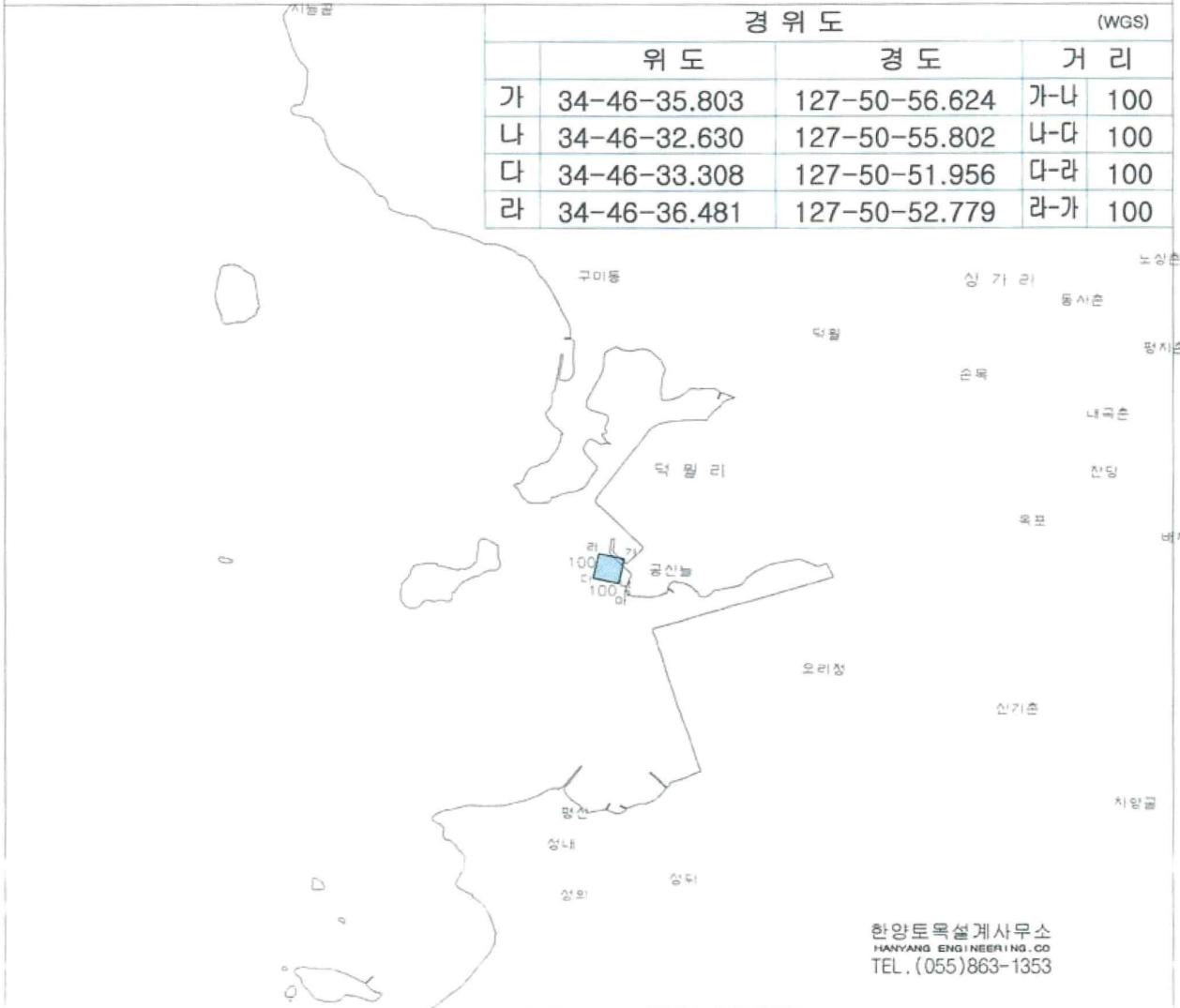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덕월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남면 덕월리
  - (마) N 34-46-31.39, E 127-50-57.08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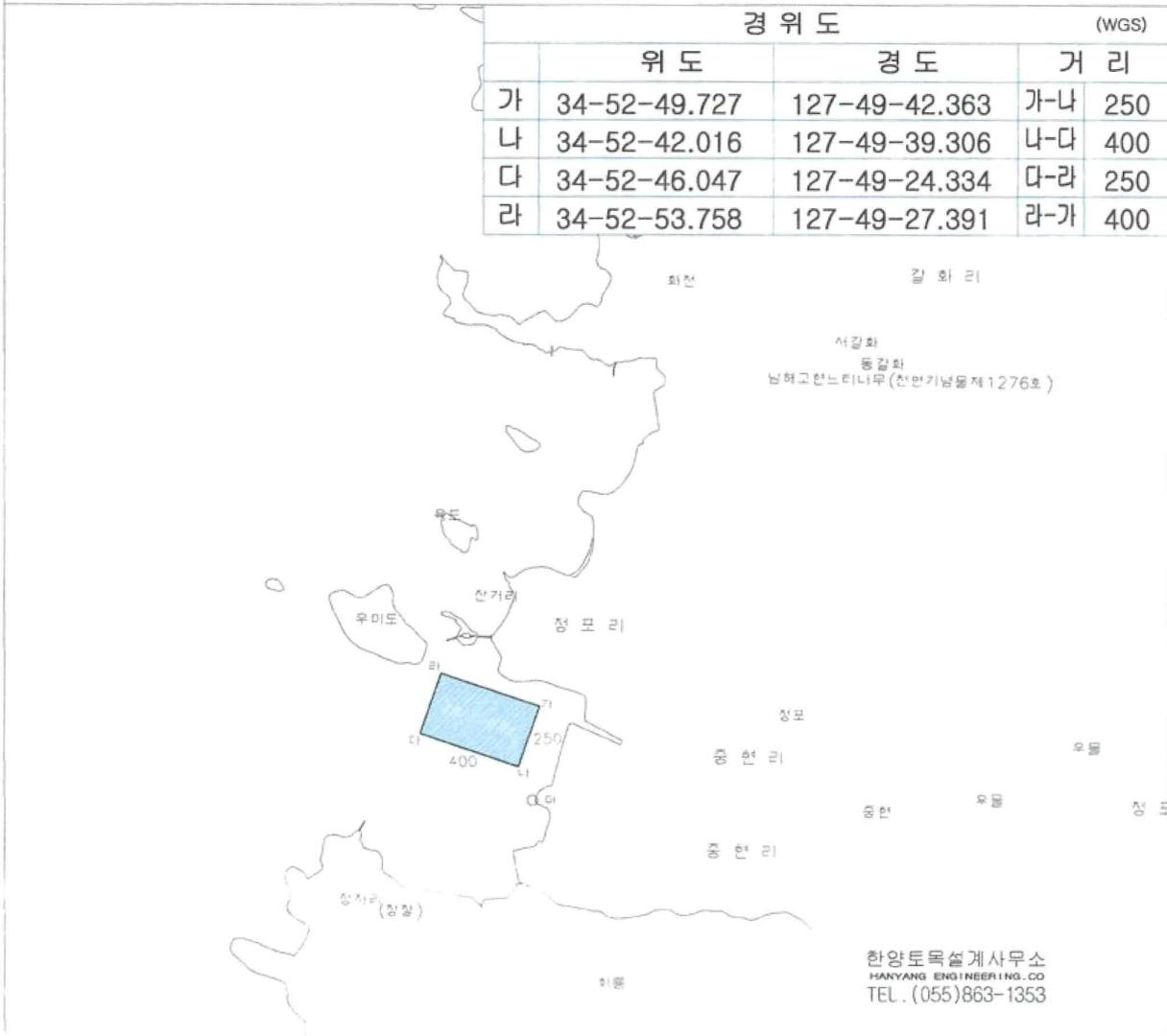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정포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서면 정포리
  - (마) N 34-52-37.75, E 127-49-41.47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100,000 m<sup>2</sup>

축 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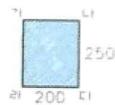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 (마) N 34-52-25.07, E 127-58-04.1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2-33.385	127-56-47.251	가-나 200
나	34-52-33.385	127-56-55.125	나-다 250
다	34-52-25.273	127-56-55.125	다-라 200
라	34-52-25.273	127-56-47.251	라-가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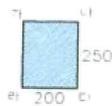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 (마) N 34-52-42.59, E 127-58-25.9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 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3-31.226	127-57-08.409	가-나	200
나	34-53-31.226	127-57-16.285	나-다	250
다	34-53-23.115	127-57-16.285	다-라	200
라	34-53-23.115	127-57-08.409	라-가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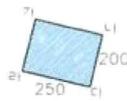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 (마) N 34-52-42.59, E 127-58-25.94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3-09.517	127-57-07.123	가-나 250
나	34-53-07.722	127-57-16.723	나-다 200
다	34-53-01.394	127-57-14.981	다-라 250
라	34-53-03.188	127-57-05.381	라-가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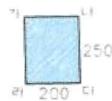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 (마) N 34-52-25.07, E 127-58-04.12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2-09.114	127-56-49.490	가-나	200
나	34-52-09.286	127-56-57.358	나-다	250
다	34-52-01.176	127-56-57.714	다-라	200
라	34-52-01.004	127-56-49.846	라-가	25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어업면허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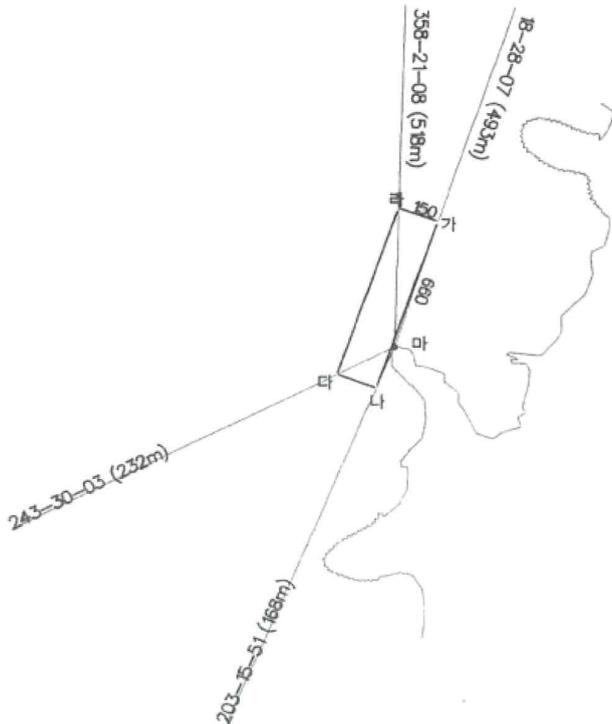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축척 :  $\frac{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 시(군) 서 읍,면,동 유포 리 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 남해 시(군) 서 읍,면,동 유포 리  
 ◦ 보조기점  
 (가): 18° 28' 493 미터의 점 (나): 203° 15' 168 미터의 점  
 (다): 243° 30' 232 미터의 점 (라): 358° 21' 518 미터의 점  
 \* 가, 나, 다, 라 각점의 좌표 아래표시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 나, 다, 라 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99,000 m<sup>2</sup>



WGS

구분	X(N)	Y(E)
가	34-52-07.74	127-48-42.47
나	34-51-47.64	127-48-33.52
다	34-51-49.31	127-48-27.97
라	34-52-09.42	127-48-36.92
마	34-51-52.62	127-48-36.17




 範宇技術團 남해한양설계사무소  
 NAM WOO ENGINEERING CO., LTD.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어업면허제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축적 :  $\frac{1}{25,000}$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 시(군) 창선 읍,면,동 소백 리 지선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 남해 시(군) 창선 읍,면,동 소백 리  
 ◦ 보조기점  
 (가) : 301° 16` 2117 미터의 점      (나) : 298° 40` 2990미터의 점  
 (다) : 294° 06` 2201 미터의 점      (라) : 296° 25` 2020미터의 점  
 \* 가, 나, 다, 라 각점의 좌표 아래표시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 나, 다, 라      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40,000 m<sup>2</sup>



WGS		
구분	X(N)	Y(E)
가	34-55-15.04	127-58-38.21
나	34-55-15.11	127-58-30.34
다	34-55-08.62	127-58-30.26
라	34-55-08.56	127-58-38.14
마	34-54-38.81	127-59-49.06

301-16-23 (2117m)  
 298-40-29 (2290m)  
 294-06-10 (2201m)  
 296-25-10 (2020m)




 蔚宇技術團 남해한양실계사무소  
 SUN WOO ENGINEERING CO., LTD.  
 TEL. (055)863-1353



# 남해양식 제 호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바다식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축척 :  $\frac{1}{25,00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적 : 50,000 m<sup>2</sup>

